

머 리 말

한국 경제의 고도성장에는 이른바 '企業集團'이라 부르는 거대기업이 큰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그러나 거대기업의 긍정적인 활약에도 불구하고, 최근들어 기업집단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기업집단의 所有가 지나치게 가족지배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이같은 주장은 전문가를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급기야는 국민정서라는 이름으로 통하게 되었다.

이같은 견해를 반영이라도 하듯 정부는 기업집단의 소유구조를 완화시키려는 일련의 조치를 시행해 오고 있다. 특히 이같은 조치들 중에서도 「신경제계획」 기간 동안 구체화될 예정인 出資總額限度制限의 엄격한 운용은 많은 논란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우리는 한국의 기업집단이 소유구조 면에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어떤 일이라도 그렇듯이 지향하는 목표가 명확하면, 부작용을 줄이고서도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다. 현재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代案은 두가지이다.

하나는 일본 기업집단의 소유구조에 가까운 法人資本主義를 도입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의 대기업과 같이 大衆資本主義에 의존하는 것이다. 어떤 제도라도 그 나름대로의 장점과 단점을 갖게 마련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두가지 대안 중에서 하나에 해당하는 일본형 소유구조의 현황과 장단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토대로 한국의 기업집단이 지향해 나가야 할 소유구조의 바람직한 모습을 찾아 보고자 한다.

저자의 연구는 일본 나고야(名古屋)대학교 客員研究員으로 지내는 동안 이루어졌다. 일본에서의 연구생활을 가능하게 도와준 일본 나고야대학 경제학부 학장인 牧戸孝郎 교수, 나고야 상과대학의 李健泳 교수와 柳町 功 교수에게 감사한다. 그리고 연구와 일본생활에 많은 도움을 준 경제구조연구센터의 豊岡文英씨와 内野若菜씨, 그리고 나고야대학의 李相和씨에게도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끝으로 귀찮은 일들을 도맡아 해준 金恩慈 연구원의 도움이 컸음을 밝혀둔다.

그러나 이 연구는 본원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무관하며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임을 밝혀둔다.

1994년 5월
韓國經濟研究院
院長 趙錫來

目 次

第 1 章 序論	1
第 2 章 日本型 企業所有構造의 本質과 展開	3
2-1. 日本型 所有構造의 本質	3
2-2. 日本型 所有構造의 展開	7
第 3 章 日本型 企業所有構造의 現況과 特性	19
3-1. 日本型 所有構造의 現況	19
3-2. 企業集團의 所有構造	26
3-3. 獨立系 企業그룹의 所有構造	38
第 4 章 日本型 企業所有構造의 效果	49
4-1. 日本型 所有構造의 肯定的인 效果	50
4-2. 日本型 所有構造의 否定的인 效果	55
第 5 章 結 論	57
5-1. 日本型 所有構造의 特性	57
5-2. 日本型 所有構造의 教訓	60
5-3. 韓國型 企業所有構造	63
參考文獻	65

表 및 그림 目次

〈表 2-1〉 所有株式 上位 10代 金融機關과 事業法人	6
〈表 2-2〉 미쓰비시財閥의 株式相互所有 現況	9
〈表 2-3〉 持株會社 및 財閥家族의 指定	11
〈表 3-1〉 上場會社의 所有者別 持株比率	22
〈表 3-2〉 金融機關의 持株比率	22
〈表 3-3〉 所有株式數 上位 30社(金融機關 基準)	24
〈表 3-4〉 所有株式數 上位 30社(事業法人 基準)	25
〈表 3-5〉 財閥系 企業그룹의 株式相互保有 現況(1989年 基準)	28
〈表 3-6〉 3代 舊財閥系 멤버企業中 株式占有 上位 10社(1991年 平均持株率)	30
〈表 3-7〉 3代 銀行系 멤버企業中 株式占有 上位 10社(1991年 平均持株率)	30
〈表 3-8〉 主要 企業集團의 大株主(上位 50位) 所有構造(1991年 基準)	32
〈表 3-9〉 舊財閥系 메인뱅크의 所有 現況	34
〈表 3-10〉 舊財閥系 綜合商社의 所有 現況	35
〈表 3-11〉 멤버企業(舊財閥系)中 主要 製造企業의 所有 現況	36
〈表 3-12〉 40代 獨立系 企業그룹	41
〈表 3-13〉 主要 獨立 巨大企業의 所有 現況	42
〈表 3-14〉 마쓰시타그룹의 主要 系列企業	44
〈表 3-15〉 마쓰시타그룹 主要 系列會社의 所有構造	45
〈表 3-16〉 日本電氣그룹의 主要 系列企業	46
〈表 3-17〉 日本電氣그룹 主要 系列企業의 所有構造	46

〈그림 2-1〉 戰爭前 日本財閥의 피라미드型 所有構造	7
〈그림 4-1〉 日本의 企業集團과 獨立系 巨大企業그룹	40

第1章 序論

우리나라 企業集團의 所有와 經營구조에 대한 비판이 증가하고 있다. 설득력을 얻어 가고 있는 '대기업 비판'을 해소하기 위하여 어떤 형식으로건 새로운 형태의 소유와 경영구조를 모색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특히 경영구조의 하부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 소유구조임을 고려하면 소유구조의 바람직한 미래상이 기업집단 문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은 '오너'에게 집중된 우리나라 기업집단의 소유구조를 변화시켜나가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수단을 사용하여 얼마만한 시간에 걸쳐서 어떤 모습으로 소유구조를 변모시켜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즉 소유집중의 완화에 대한 手段(tool)과 視界(time horizon) 그리고 目標(goal)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들어 관심을 끌고 있는 대안은 日本型 法人資本主義이다. 이른바 법인이 법인을 소유하는 형식의 소유구조가 우리나라 기업집단의 바람직한 미래상으로 제시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소유집중 문제를 기업간 상호소유를 촉진함에 의하여 해소해 나갈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동안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銀行에 의한 大企業 負債의 株式 交換이라든지 대기업에 의한 中小企業의 지분참여 확대 등과 같은 구상은 기본적으로 일본형 법인자본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하겠다.

어떤 制度든지 그것이 뿌리를 내리게 되는데는 독특한 토양이 있기 마련이다. 日本의 法人資本主義도 예외가 아니다. 이질적인 토양을 가진 나라가 다른 나라의 제도를 그대로 들여온다고 해서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제도라도 도입에 앞서서 그 제도가 가진

특성과 문제점 그리고 역사적 발전과정을 철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국가는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형보다 훨씬 진보된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다. 이같은 맥락에서 일본의 법인자본주의를 연구대상으로 삼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研究의 目的은 日本形 企業所有構造의 역사적 전개과정, 현황과 특성,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이다. 또한 일본형 기업소유구조가 한국 기업집단의 바람직한 소유구조에 어떤 시사점을 주고 있는가를 도출하는 일이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바람직한' 韓國型 企業所有構造의 模型을 모색하는 일이다.

研究의 構成은 제 2장에서 일본형 기업소유의 본질과 역사적 전개과정을 소개하고 있다. 제 3장에서 日本의 企業集團과 獨立系 企業 그룹의 소유구조를 분석한다. 제 4장에서는 일본형 소유구조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제시한다. 끝으로 日本型 소유구조가 한국의 기업집단에 시사하는 바를 정리하고 韓國型 所有構造의 모형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第2章 日本型 企業所有構造의 本質과 展開

일본형 기업소유구조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에 앞서서 그것이 뜻하는 바와 역사적인 전개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다음의 세가지 관점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첫째, '법인에 의한 법인소유'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둘째, 법인소유 현상은 언제 어떤 배경에서 생겨나게 되었는가. 셋째, 법인소유 현상은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日本 資本主義의 독특한 시스템으로 자리를 굳히게 되었는가.

첫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법인자본주의의 대표적인 논자의 하나인 奥村宏 교수의 견해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두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2차대전 이후에 이루어진 일본재벌의 해체과정을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를 전후하여 財閥로부터 企業集團이 새롭게 등장하게 되는 과정을 주목하여야 한다. 즉 1945년부터 1954년까지 이루어진 재벌 해체와 이를 뒤이은 일본자본주의의 再編成 과정을 말한다. 세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法人化 현상이 급속히 진행되는 1965년부터 1974년까지의 전개과정을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이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일본의 資本自由化와 貿易自由化정책이 소유구조의 법인화현상에 끼친 영향과 정부 및 기업의 대응방법을 살펴본다.

2-1. 日本型 所有構造의 本質

日本經濟 혹은 기업구조의 주요한 특징은 법인소유가 주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는 법인소유 현상을 체계화하고 이른바 법인자본주의론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여 온 奥村宏 교수의 견해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먼저 넓은 의미의 일본형 법인소유 구조를 살

펴본다. 그리고 법인자본주의의 根幹에 해당하는 주식소유구조의 법
인화현상을 중심으로 좁은 의미의 법인자본주의를 정한다.”

법인자본주의론을 일관되게 주장하여 온 奥村宏는 법인중심의 소
유구조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현대 일본사회는 ‘會社本位’
사회로 ‘會社絶對主義’라 부를 수 있는 원리가 일관되게 흐르고 있
다. 이것을 법인자본주의라 규정하는 것이 법인자본주의론의 핵심이
다.”²⁾

이것은 일본사회가 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임을 뜻한다. 비단
경제분야 뿐만 아니라 정치, 문화, 사회, 교육분야 등에서도 ‘會社中
心’의 원칙이 강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말한다. 이같은 원칙은 회사내
부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경영자 뿐만 아니라 종업원들도
모두 회사중심이라는 원칙에 의하여 행동하게끔 되어 있다.

이것은 법인자본주의가 會社中心 혹은 會社絶對主義의 원칙이 사
회의 모든분야 뿐만 아니라 회사내부를 주도하는 하나의 강력한 믿
음 혹은 원칙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법인자본주의는 이같은 원칙을
기반으로 하는 자본주의 시스템의 한가지 類型(pattern)임을 나타내
고 있다.

그러나 법인자본주의를 제창한 奥村宏는 ‘회사중심’의 시스템이 가
진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다시 말
하면 회사중심의 사회가 가진 이른바 ‘얼굴없는 會社人間’의 대량생
산, 지가 및 주가조작, 낮은 배당정책, 그리고 배타적인 내부거래 등
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에서 법인자본주의론을 내놓았다. 법인소유에
기초한 일본형 기업소유구조가 가진 장단점에 대해서는 4장에서 자

1) 奥村宏, 『法人資本主義の構造』, 現代教養新書, 1991, P.130-132와 『法人資本
主義-「會社本位」の體系』, 朝日文庫, 1991, P.71-88, 그리고 『日本の株式會
社』, 東洋經濟新報社, 1986, P.3-13 참조.

2) 奥村宏, 『解體する「系列」法人資本主義』, 社會思想社, 1992, P.6 인용.

세하게 다루도록 한다.

‘會社中心’의 자본주의 시스템을 이루는 골격은 역시 기업이다. 여러가지 유형의 회사 중 일본기업의 근간을 형성하고 있는 대규모 주식회사를 들 수 있다. 주식회사의 성격과 특성을 규정하는 요인 중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업의 株式所有構造이다. 즉 일본기업이 취하고 있는 독특한 주식소유구조를 중심으로 법인자본주의론을 좁은 의미로 다시 정의할 수 있다.

法人資本主義는 거대한 기업과 은행이 個人投資者가 아닌 法人企業(금융기관 혹은 사업법인)에 의하여 주로 소유되는 것에 기초하고 있다. 즉 전통적으로 법인기업의 소유주체는 무수히 많은 개인투자자이다. 그러나 이와 달리 개인투자자를 대신하여 법인이 기업소유의 주체를 이루는 경제체제가 법인자본주의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일본형 기업소유구조는 ‘株主所有의 법인화’와 ‘大株主에 의한 주식소유의 집중화’에 기초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좁은 의미의 법인자본주의는 ‘株式이 特定法人 대주주에 의하여 集中되는 현상’이 이루어지는 자본주의의 한가지 유형을 뜻한다. 특히 법인소유구조는 제 2차 세계대전의 종결과 함께 새롭게 형성된 일본기업의 독특한 주식소유 형태를 부를 때 사용된다.

예를 들면, 東洋經濟新報社가 발행하는 『企業系列總覽』은 ‘株主所有의 법인화’와 ‘大株主에 의한 주식소유의 集中化’라는 두가지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매년 제시하고 있다.(〈表 2-1〉 참조) 金融機關(91년도) 중에서 가장 많은 주식을 보유한 기업은 日本生命保險으로 총 122억 천 백만주를 소유하여 상장주식 전체의 2.98%를 차지하고 있다.³⁾

3) 東洋經濟新報社, 『企業系列總覽 '93』, 1992, P.75, “所有株式 上位 30社와 株主順位社數(1991년도)” 참조.

다음으로 第一生命保險(74억 3천6백만주;1.82%), 미쓰비시信託銀行(68억 6천3백만주;1.68%), 스미토모(住友)信託銀行, 日本興業銀行, 스미토모生命保險, 메이지(明治)生命保險, 미쓰이(三井)信託銀行, 사쿠라銀行, 東洋信託 등의 순서이다. 이같이 생명보험회사, 신탁은행, 장기신용은행, 도시은행 등이 법인주식 점유율의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事業法人에서는 도요타가 총 15억 8천 9백만주를 소유하여 최고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상장주식 전체의 0.39%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히타치(日立)製作所(14억 2천7백만주;0.35%), 新日本製鐵(11억 9천7백만주;0.29%), 마쓰시타(松下)電氣産業, 닛산(日産)자동차, 미쓰비시商社, 미쓰비시重工業, 도시바(東芝), 미쓰이物産, 日本電氣 순서이다. 이같이 자동차, 전기, 철강과 종합상사 분야에서의 상위를 점하고 있는 거대기업들이 대주주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주목할 만한 점은 金融機關과 事業法人의 상대적인 비중이

〈表 2-1〉 所有株式 上位 10代 金融機關과 事業法人

(단위 : 백만주)

순위	회사명	금융기관 주식수 (비중)	회사명	사업법인 주식수 (비중)
1	일본생명보험	12,211 (2.98%)	도요타자동차	1,589 (0.39%)
2	제일생명보험	7,436 (1.82%)	히타치제작소	1,427 (0.35%)
3	미쓰비시신탁	6,863 (1.68%)	신일본제철	1,197 (0.29%)
4	스미토모신탁	6,683 (1.63%)	마쓰시타전기	1,110 (0.27%)
5	일본흥업은행	5,639 (1.38%)	닛산자동차	997 (0.24%)
6	스미토모생명	5,561 (1.36%)	미쓰비시상사	961 (0.23%)
7	메이지생명	5,079 (1.24%)	미쓰비시중공업	815 (0.20%)
8	미쓰이신탁	5,060 (1.24%)	도시바	674 (0.16%)
9	사쿠라은행	4,776 (1.17%)	미쓰비시물산	571 (0.14%)
10	동양신탁은행	4,228 (1.03%)	일본전기	508 (0.12%)

주 : 비중은 (해당회사 소유주식총수/상장회사 주식총수)

자료 : 東洋經濟新報社, 『企業系列總覽 '93』, 1992, P.75 〈表 4〉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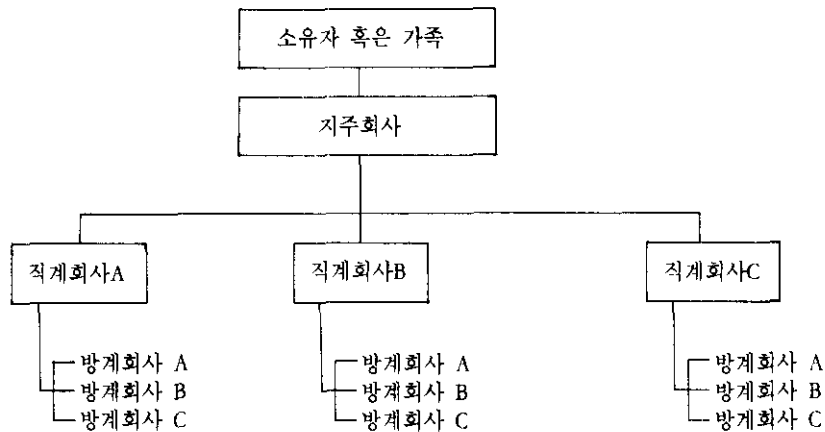
다. 금융기관이 사업법인에 비하여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법인자본주의를 구성하는 요인 중 금융자본이 산업자본에 비하여 월등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2-2. 日本型 所有構造의 展開⁴⁾

戰前 日本企業의 피라미드型 所有構造

財閥解體에 의하여 일본의 자본주의체제는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전쟁전 일본기업이 가진 株式所有構造의 특징은 재벌에 의한 피라미드형 소유구조이다. 즉 財閥本사가 지주회사(holding company)로서 존재하고 재벌가족은 지주회사를 이용하여 계열기업

〈그림 2-1〉 戰爭前 日本財閥의 피라미드型 支配構造



4) 奥村宏(1991), 鈴木邦夫, "財閥から企業集團企業系列へ-1940年代後半 企業間結合 解體・再編過程-", 『土地制度史學』, 第135號, 1992.4와 大藏省財政史室編, 『昭和財政史-終戦 講和-』 第2卷(獨占禁止, 1982年刊)과 第14卷(保險・證券, 1979年刊) 참조.

을 지배하는 형태를 가지게 된다.(〈그림 2-1〉 참조) 궁극적으로 소유자 혹은 가족은 지주회사를 지배한다. 그러나 지주회사는 직계회사를 그리고 직계회사는 방계회사를 지배하는 주식소유구조를 갖고 있다.

재벌해체 대상으로 지정된 당시 미쓰비시財閥은 직계회사 11사, 분계 및 관계회사 16사, 그리고 나머지 방계회사 48사를 포함하여 총 75사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미쓰이財閥은 직계회사 10사, 준직계기업 12사, 그리고 나머지 손회사 및 투자회사를 포함하여 총 151개회사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면, 미쓰비시財閥의 경우 산하기업 주식의 대부분을 소유하는 미쓰비시本社가 지주회사로서 존재한다. 그리고 미쓰비시本社에 대해서는 岩崎家が 주식의 대부분을 소유하여 지배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岩崎家は 지주회사를 이용하여 손쉽게 산하기업을 지배하는 피라미드구조를 취하고 있다.(〈表 2-2〉 참조)

재벌이 해체되는 당시 岩崎家は 미쓰비시本社에 대해서 48.5%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그밖에 岩崎家が 직접 직계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도 있으나 그 비중은 미미한 실정이다. 아울러 직계기업들끼리 상호출자에 의해서 주식소유구조가 강화되는 경우도 있다. 미쓰비시重工業에 의한 미쓰비시製鋼의 소유(25%), 미쓰비시 鑛業에 의한 미쓰비시石油의 소유(15%), 그리고 미쓰비시商事に 의한 미쓰비시石油의 소유(15.0%)를 들 수 있다.

한편 미쓰이財閥의 경우도 거의 유사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예를 들면, 미쓰이家が 미쓰이本社 주식의 66.8%를 갖고 있다. 그리고 이 같은 지주회사를 이용하여 산하기업의 대부분을 지배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⁵⁾

5) 安岡重明, 『三井財閥』, 日本經濟新聞社, 1982, P.289 참조.

〈表 2-2〉 미쓰비시財團의 株式相互所有 現況

피소유자	소유자										
	본사	중공업	전기	광업	상사	참고	은행	제철	화성	가족	합계
본사			0.0				0.7			47.8	48.5
중공업	22.6		1.7		0.3		1.7			0.5	26.8
전기	44.3									0.3	44.6
광업	42.6	0.3			0.2	0.1				0.5	43.9
상사	40.4	1.3	0.7	0.8		0.4		0.2	0.2	1.0	44.7
참고	46.8									0.5	47.3
지소	65.1									1.6	66.7
은행	30.3			0.1	0.1					2.0	32.4
신탁	19.0						0.2			6.0	25.3
석유	45.0			15.0	15.0						75.0
제강	51.0	25.0									76.0
화성	11.8			13.2						13.8	38.7

주 : 기업명에서 미쓰비시는 생략

자료 : 株主會社整理委員會, 『日本財團とその解體』, 1951, P.114-115 재작성

經濟民主化와 財團解體

이같은 피라미드형 지배구조를 바탕으로 하는 재벌은 패전과 함께 강한 비판의 대상으로 등장하게 된다. 점령군 최고사령부는 포츠담 선언의 기본방침에 의거하여 「日本經濟制度의 民主化」작업을 실시하게 된다. 경제민주화정책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노동자의 단결권 보장과 노동자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勞動組合法과 勞動基準法 제정 및 시행을 들 수 있다. 둘째, 농업 및 토지면에서 민주화를 이루기 위하여 경작농민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農地調整法 및 農業協同組合法 제정 및 시행을 들 수 있다. 끝으로 기업면에서 민주화를 촉진하기 위한 재벌해체, 통제단체 제거, 그리고 독점금지법 제정 및 시행을 들 수 있다. 위의 조치 중 특히

財閥解體가 경제민주화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재벌해체의 기본내용은 지주회사의 해체와 재벌가족의 경영권 배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점령군의 요청에 의하여 1945년 11월 4일에 만들어진 日本 政府의 財閥解體案은 다음과 같다.

(ㄱ) 4대 재벌의 지주회사가 소유하는 모든 증권 및 상사, 법인, 그 밖의 기업에 대하여 일체의 소유권, 권리 및 이권의 증표는 일본정부가 설치하는 整理委員會에 이관. 그리고 위원회에 의한 해체절차를 밟을 것. (ㄴ) 각 지주회사의 이관재산에 대하여 보상은 10년간 환가양도를 금하는 일본정부의 공채로 변제할 것. (ㄷ) 4대 재벌일족의 모든 구성원은 해당 은행 혹은 사업에서 차지하고 있는 현직으로부터 은퇴할 것. (ㄹ) 각 재벌 지주회사의 취재역 혹은 감사역 등 임원도 현직에서 은퇴할 것. (ㅁ) 각 재벌 지주회사는 산하 은행 회사 등에 대하여 명령권과 관리권의 행사를 중지할 것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점령군 사령부는 일본정부의 원안에 대하여 약간의 留保條件을 첨부하여 수용하게 된다. 동시에 4대 재벌 지주회사 외에 그밖의 지주회사를 포함하는 수정안을 요구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1946년 11월 일본정부에 의하여 재벌해체를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持株會社整理委員會가 설립된다.

整理委員會는 1946년 9월 미쓰이본사, 미쓰비시본사, 스미토모본사, 야스다(安田)保善社, 후지産業 등 5개사를 우선 해체대상으로 지정한다. (<表 2-3> 참조) 뒤이어 2차와 3차로 각각 40개사와 20개사를 지정하고, 4차와 5차에 각각 2사와 16사를 지정하여 총 83개사가 해체대상 지주회사로 선정된다. 그밖에 재벌가족 56명의 현직은퇴가 결정된다.

財閥解體의 기본내용은 재벌지배의 중심이 되어왔던 지주회사인 재벌본사를 해체하여 財閥의 기업지배를 배제하는 것이다. 나아가 소

〈表 2-3〉 持株會社 및 財閥家族의 指定

	지정 연월일	회사수	해산	존속	기 타
제 1차 지정	1946년 9월 6일	5	5	0	三井, 미쓰비시, 住友, 安田, 中島 각 본사
제 2차 지정	1951년 12월 7일	40	15	25	野本사등 2류재벌과 東芝 등 사업검업지주회사
제 3차 지정	1951년 12월 28일	20	5	15	三井광산등 종속회사로 지주회사 성격을 지닌회사
제 4차 지정	1951년 12월 28일	2	2	0	國際電氣通信, 日本電氣通信工業 2사
제 5차 지정	1952년 9월 26일	16	15	1	중소, 지방재벌
합 계		83	42	41	
재벌가족	1951년 3월 1일	56			10대재벌가족
	1951년 8월 1일	1			安田家상속인
	합 계	57			

자료 : 公正去來委員會, 『獨占禁止政策 20年史』, P.16-17 재작성

유주식을 공개하여 지배구조의 민주화를 달성하는것이 재벌해체의 핵심 내용이다. 持株會社整理委員會는 회사의 성격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네가지 조치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첫째, 純粹 持株회사의 성격을 가지는 28개 회사에 대해서는 해산 명령을 내린다. 아울러 지주회사가 보유하는 유가증권은 持株會社整理委員會에 위임된다.

둘째, 중요한 사업활동을 겸하고 있는 51개 持株會社는 일본경제의 재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해산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지주회사 성격을 배제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을 지주회사정리위원회에 위임한다.

셋째, 事業部門을 유지하고 있는 지주회사 중 미쓰이物産과 미쓰비시商事 두개 회사는 순수한 지주회사와 같이 해산명령을 받게 된다. 그 이유는 일본 경제의 민주화에 장애가 된다는 것이다. 넷째, 國

營企業 성격을 지닌 제 4차 지정대상인 2개 회사는 해체대상에 포함된다. 결과적으로 83개 회사가 지주회사정리위원회에 양도하게 되는 주식총수는 1억 6천 567만 3천주, 불입금액으로는 75억 7천 백만엔에 달하게 된다.

한편 10대 재벌가족 56명이 지주회사정리위원회에 양도하게 되는 재벌가족소유의 有價證券은 총액 12억 199만 8천엔이었다. 그중 약 반에 해당하는 6억엔은 재산세로 현물형식이었다.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처분을 위임받는 주식은 4억8천822만엔, 공사채와 기타분이 855만 5천엔으로 합계 9억 678만3천엔에 달한다.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 해체대상인 83개 회사(지주회사정리위원회령에 의하여 지정됨)와 재벌가족 56명(회사해산령에 의하여 지정됨)에 대한 지정이 끝나게 된다. 이후 1946년 11월에 공포된 「會社の有價證券 保有制限 등에 관한 訓令」에 기초하여 재벌관계회사가 확정된다. 즉 83개 회사와 직간접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관계회사를 제한회사(지정회사), 자회사(종속회사), 손회사(관계회사)로 분류하고 이들이 소유한 유가증권 역시 83개회사와 동일한 절차로 지주회사정리위원회에 위임된다.

결과적으로 1950년경을 기준으로 보면 지정회사 689사, 종속회사 1,383사, 관계회사 689사로 총 2,834사가 「有價證券保有訓令」의 제한을 받게 된다. 유가증권환령에 의하여 지주회사정리위원회가 처분을 위임받게되는 유가증권은 총수 약 4천만주, 불입금액 약 16억 7천만엔에 달한다. 이후에 다소 적용범위가 축소되어 최종적으로 3,436만 6천 591주, 불입금액 15억 4천 513만 8천주에 달하게 된다.

이들 외에 「閉鎖機關 整理委員會令」에 의하여 폐쇄기관정리위원회에 처분이 위임된 주식, 전쟁보상특별세 혹은 재산세의 현물납입주식으로 처분이 필요한 것, 독점금지법에 의하여 처분이 필요한 주식 등을 모두 포함하면 당시 처분대상은 총액 181억에 달하였다. 1946

년말을 기준으로 주식회사 납입자본금 총액의 규모는 총 437억엔에 이르고 있음을 고려하면 약 42%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가 증권시장을 통하여 처리되어야만 하였다.

財閥解體의 後遺症과 自社株 所有現象

재벌해체조치가 직면하게 되는 가장 큰 어려움은 막대한 유가증권을 어떻게 처분하느냐와 신규로 공급되는 주식을 누가 소유하느냐는 문제이다. 결과적으로 자본주의 체제의 근간을 형성하는 주식의 소유구조가 근본적인 변혁을 경험하게 된다. 주식처분을 위하여 1947년 6월에 '證券處理調整協議會'가 만들어지게 된다. 협의회는 주식처분에 있어서 몇가지 기본원칙에 입각하여 주식처분을 행하게 된다.

기본원칙은 (ㄱ)주식처분에 있어서 해당 발행회사 從業員에 대하여 優先權을 부여함.(ㄴ)持株會社 혹은 財閥家族에 대해서는 매각하지 않음.(ㄷ)지주회사의 從屬會社, 즉 1945년 훈령 제657호「會社解散의 制限 등의 件」에 기초하여 지정된 회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매각하지 않음. 그러나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ㄷ)해당 주식총수의 1%이상을 소유하는 주주에 대해서는 매각하지 않음. 그리고 매각주식과 종래부터 소유하는 주식과의 합계가 해당주식총수의 1%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각하지 않음.(ㄹ)해당 주식의 1%라 할지라도 과도한 투자집중이 있는 경우에는 매각비율을 축소함으로써 구성된다.

이같이 엄격한 기본원칙에 입각하여 재벌해체를 실시하는 배경에는 美國型 資本主義를 일본에 뿌리내리고자 하는 점령군의 구상이 담겨있다. 다시 말하면 주식을 일반 대중속에 광범위하게 확산하여 大衆資本主義를 일본에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이 점령군의 기본구상이라 할 수 있다. 게다가 재벌해체 이후에 등장할 지도 모르는 새로운 형태의 자본집중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의도도 숨어 있었다.

그러나 현실의 여건을 무시한 이같은 구상은 원래 의도대로 맞아들여가지 않게 된다.

株式處分 상황을 보면 從業員에 대한 처분 38.5%, 一般人에 대한 매출 27.7%, 入札 23.3%, 戰時報償特別稅 물납분이 7.4%, 會社解散 보상분이 2.9%, 외국인재산환원 0.2%를 차지하고 있다. 종업원, 일반인, 입찰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실로 미루어 걸으로 볼 때 大衆資本의 동원이 상당부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상은 의견과는 차이가 나게된다. 여기서 이에 대하여 좀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從業員에 대한 처분이 38.5%에 달하고 있다. 점령군의 초기 구상인 從業員 지주제로의 이행이 상당부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과연 진정으로 이만큼의 물량이 종업원분으로 배분되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주식처분이 완료된 시점인 1950년 3월에 持株會社整理委員會는 다음과 같이 종업원처분에 대하여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문제는 종업원의 주식구입자금에 있다. 저임금에 의한 종업원의 생활고는 敗戰과 함께 심화되는 물가상승에 의하여 더욱 악화되게 된다. 종업원 지주제가 바람직하고 설령 종업원들이 주식투자에 대한 의욕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주식을 매입할만한 자금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증권구입 자금을 해당회사가 종업원들에게 融資하여 3자 명의에 의한 위장매입을 이용하여 종래의 경영권을 유지하려는 움직임도 있었다. 결과적으로 從業員들이 株式買入에 대한 충분한 여력을 가지지 못한점으로 말미암아 종업원 처리분의 상당 부분이 해당기업에 의한 다른 형태의 自社株 保有形式으로 변모되게 된다.

이같은 상황은 일반인에 대한 매출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일반처분(입찰처분, 매출처분)은 총처분의 53.1%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의 매입단계에 있어서는 그동안 해체대상 지주기업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던 證券會社 및 保險會社가 팔목할 만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종업원과 일반인에 대한 처분물량은 회사임원, 종업원 혹은 관련 증권회사, 보험회사 및 은행 등에 귀속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해당회사가 자금을 직접적으로 투입하거나 관련 금융기관의 용자에 의한 매입의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실상 재벌해체에 의한 주식공급 물량은 自社株 형식으로 보유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自社株 保有라는 형식은 이미 법인에 의한 주식소유라는 일본의 독특한 자본주의 형성을 豫見하고 있다.

日本資本主義의 再編成과 法人化現象의 擡頭

財閥解體에 의하여 막대한 주식물량이 시장에 방출된다. 여기에 주식시장의 혼란에 박차를 가한 것은 1948년부터 1949년까지 행해진 「企業再建整備法」에 의한 증자물량을 들 수 있다. 전쟁중에 일본정부는 군수회사 등에 대해서는 발생한 피해액을 보상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따라서 종전후 戰時報償의 일환으로 「企業再建整備法」과 「金融機關再建整備法」에 의거하여 손해분을 주주와 채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자본구성의 악화분을 増資로 보전하는 방법을 사용하게 된다. 이는 이미 포화상태에 달한 주식시장에 또 다른 혼란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당시 韓國戰爭이라는 특수를 맞게된 대기업들은 한쪽으로는 중소기업에 대한 일방적인 系列化政策을 사용하면서 또 다른 면으로는 대기업간에 새로운 형태의 결합관계를 추구하게 된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새로운 형태의 종합관계는 전혀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지게 된 것은 아니다. 이미 지주회사의 해체를 계기로 구재벌 계열사를 중심으로 서로 系列企業의 주식을 소유해주는 목인된 自社株

보유가 이루어져 있었다. 다만 이러한 묵시적인 自社株 보유가 좀더 체계적이고 공공연하게 행하여지게 된 점이 차이라 할 수 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새롭게 만들어지는 제도가 이러한 法人所有를 촉진하게 되는 인센티브로 작용하게 되었다.

엄청나게 증가한 주식물량, 이를 매입할 만한 여력을 갖지 못한 개인투자자, 그리고 이렇다할 만한 기관투자자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가능한 대안은 기업들이 서로 서로에 대하여 주식을 매입하여 주는 방법일 것이다. 현실적으로 株式의 相互所有가 대안으로 사용되게 된다.

이러한 현실적인 인식에 근거하여 法人所有를 촉진하는 획기적인 정책이 실시되게 된다. 이것은 재벌구조의 부활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회사가 다른회사의 주식소유를 엄격하게 금지한 獨占禁止法의 개정을 들 수 있다. 원래 점령군사령부에 의하여 경제민주화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獨占禁止法이 1949년에 제정된다. 이중 제 9조, 제 10조, 제 11조는 재벌해체의 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의 일환으로 만들어지게 된다. 제 9조 持株會社 禁止條項, 제 10조 事業會社의 다른 회사 株式所有 禁止, 그리고 제 11조는 金融機關의 株式所有에 대한 制限을 들 수 있다.

주식시장의 혼란수습을 목적으로 재벌해체효과의 항구화라는 초기의 법제정 목적이 후퇴하게 된다. 즉 기업간의 相互出資가 불가피한 방향으로 정책이 일대전환을 하게 된다. 1949년 제정당시 제 10조는 “金融業 이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1951년에 개정된 법률은 “금융업 이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자기와 국내에 있어서 경쟁관계에 있는 국내의 다른회사의 주식 혹은 사채를 취득할 수 없다.” 따라서 경쟁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회사의 주식취득을 원칙적으로 인정하게 된다.

이같이 獨占禁止法 개정에 의하여 1940년대 후반부터 50년대 전반에 걸쳐서 相互所有는 급격히 진행되게 된다. 특히 이러한 움직임에 주요한 動因을 제공하게 되는 몇가지 사건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첫째, 주식소유의 혼란기를 이용하여 주식매입에 의한 經營權 탈취 움직임이 일어나게 된다. 따라서 주요 기업들은 경영권 안정화를 위하여 법인소유를 증대할 필요를 절감하게 된다. 둘째, 50년대 전반기부터 戰前 재벌계열사를 중심으로 社長會가 결성되고 이를 중심으로 그룹내부에 계열용자에 의한 그룹 기업간 결속력 강화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게 된다. 역시 자본소유에 의한 결합만큼 결속력을 다질 수 있는 수단도 흔하지 않기 때문이다. 셋째, 1953년, 1954년에 있었던 일본의 증시불황을 들 수 있다. 실권주를 동일계 기업들이 인수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게 된다. 넷째, 독점법 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주식소유 제한이 5%에서 10%로 상향조정되게 된다.

여기에 큰 역할을 담당한 것은 신설된 독점금지법 제 9조에 의한 지주회사 금지조항, 그리고 상법 210조에 의한 自社株 保有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물론 당시에 또 하나의 대안이 이탈리아의 IRI방식으로 방출된 株式의 國有化라는 문제가 조심스럽게 거론된 적이 있다. 그러나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단순한 안에 그치고 말았다.

法人化現象의 加速化

法人所有가 급속한 속도로 진행되어 자리를 굳힌 것은 1965년부터 1974년 동안이다. 예를 들면, 1965년에 法人所有는 41.8%(사업법인 18.4%; 금융기관 23.4%)였다. 그러나 1974년에는 61.4%(사업법인 27.5%; 금융기관 33.9%)로 증가하게 된다. 2차대전 이후 전 기간을 통털어 이렇게 법인소유분이 급속히 증가한 기간은 없다. 그렇다면 법인소유가 급격히 증가한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동일기간 동안 이루어진 日本共同證券과 日本證券保有組合에 의한 凍結株 放出事件을 들 수 있다. 증권공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증권매입을 목적으로 두 기관이 설립되게 된다. 먼저 1964년 1월 20일 14개 도시은행, 4개 증권회사의 공동출자와 일본은행의 특별음자에 힘입어 일본공동증권이 설립되게 된다. 본격적인 주식매입은 1964년 3월부터 개시하게 된다. 그러나 공동증권에 의한 주식의 대량매입에도 불구하고 주식가격 하락현상이 멈추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일본정부는 1965년 1월, 10개 투자신탁의 공동출자로 3년 한시기구의 형식으로 일본증권보유조합을 발족시키게 된다.

두 기관이 매입한 주식은 주로 대기업주식 중 우량주와 대형주에 집중되었으며 그 분량은 38억 2천 448만주로 전국증권거래소 一部 상장주식총수 763억 8천207만주의 5.1%에 달하고 있다. 본격적인 동결주의 방출이 증권보유조합의 경우 1966년 7월에 시작되어 1969년 1월에 종결되게 된다. 한편 공동증권의 경우는 1966년부터 시작되나 본격적인 방출은 1968년 이후 1971년 1월에 모든 주식의 방출이 종결되게 된다.

이러한 凍結株 방출을 맞이하여 각 企業그룹은 상호소유의 형식을 대규모로 진행하게 된다. 특히 50년대 한국동란으로 인한 특수에서 시작된 일본경제의 고도성장은 기업들에게 충분한 매입여력을 허락하고 있다.

둘째, 資本自由化에 대응하기 위한 安定株工作이라는 차원에서 기업간 상호출자가 유행병처럼 번지게 된다. 즉 외국자본의 일본진출이 허용됨에 따라 외국기업에 의한 주식매입과 이를 통한 경영권 탈취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같은 우려는 그 당시 상당한 위기의식을 불러 일으키게 된다. 결과적으로 동일 그룹을 중심으로 서로의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第3章 日本型 企業所有構造의 現況과 特性

‘法人이 法人을 所有’하는 일본 기업의 株式所有構造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 이 章에서는 주식소유구조의 구체적인 모습과 특징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첫째, 企業集團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대기업들의 소유구조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특히 企業集團의 중심을 이루는 이른바 核心企業들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셋째, 기업집단과 구분되는 獨立系 企業그룹의 소유구조가 기업집단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

3-1. 日本型 所有構造의 現況

戰後 日本企業은 再編成 과정을 거치는 동안 주식소유구조는 몇가지의 뚜렷한 특징을 갖게 되었다. 첫째, 個人이 차지하는 株式所有의 비중이 현저히 감소하게 된다. 예를 들면, 1949년 69.1%까지 차지하였던 個人의 주식소유분은 財閥解體가 완결되는 1955년에는 53.1%까지 하락한다. 다음으로 주식소유의 법인화현상이 뿌리를 내리게 되는 기간(1965년부터 1974년까지)이 지난 첫 해인 1975년에는 個人의 주식소유분이 33.5%까지 하락하게 된다. 개인지분율의 감소현상은 그 이후에도 꾸준히 계속되어 1990년과 1991년도에는 각각 23.1%와 23.2%까지 하락하고 있다.(〈表 3-1〉 참조)

그동안 일본 국민의 가처분소득은 日本經濟의 高度成長과 더불어 급격하게 증가해 왔다. 더욱이 日本의 주식시장 규모는 2조 8,216억 6천만달러(90년도 주식시가총액기준)로 GDP대비 94.8%에 이르고 있다.⁶⁾ 이에 반하여 美國과 獨逸의 주식시장 규모는 각각 2조 6,921억 2천 3백만달러와 8,581억 6천 5백만달러로 GDP대비 각각 49.9%와

22.9%에 불과하다. 이같이 주식의 공급규모로 보나 개인의 가처분 소득에 근거한 수요규모로 보나 개인소유분의 급격한 감소는 이례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둘째, 個人持分率의 감소분에 비하여 법인에 의한 지분율의 비중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개인지분을 감소의 대부분은 법인지분을 증가에 의하여 대체되는 현상이 발생한다.⁷⁾

法人持分率은 크게 金融機關과 事業法人으로 나눌 수 있는데 금융기관의 지분율은 1949년 9.9%에서 법인자본화 현상의 완성에 해당하는 1975년에 이미 34.5%에 이르고 있다. 1975년 이후에도 계속적인 증가추세에 있으며 1985년에는 이미 40%대에 달하고 있다. 1990년과 1991년에 각각 41.6%와 41.5%에 이르고 있다.

金融機關分의 증가추세를 세분하여 살펴보면, 投資信託과 年金信託分을 제외한 銀行에 의한 소유비중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며 그 증가추세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表 3-2〉 참조) 투자신탁분을 제외한 은행의 비중은 1966년 11.8%에서 1990년과 1991년에는 각각 22.5%와 22.7%를 차지하고 있다. 투자신탁분 뿐만 아니라 연금신탁분을 제외한 은행의 지분도 1990년과 1991년에는 각각 21.6%와 21.7%까지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다 安定持株에 큰 역할을 담당하는 生命保險會社의 증가분은 1966년의 9.2%에서 1991년 13.2%까지 증가하고 있다. 더욱이 중요도 면에 있어서 약간 뒤지는 점이 있으나 안정지주 역할을 담당하

6) 經濟企劃廳, 『平成4年版 經濟白書』, 1992, P.236 참조.

7) 商法 개정에 발맞추어 1985년부터 기존의 株式數基準으로부터 單位數基準으로 변경함. 단위수기준이라 함은 일정수 이상의 주식분포상황을 가리키며 단위수를 산정하는 경우 단위미만주(단위지주가 소유하는 단위미만주를 포함)는 제외함. 全國證券去來協議會, 『株式分布狀況調査』, 1985, 1986, P. 11 참조.

는 손해보험회사의 비중 역시 1966년의 3.3%에서 1970년의 4.0%까지 증가하고 그 이후 4%대를 전후하여 안정된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事業法人이 차지하는 지분율은 비중 면에 있어서 금융기관분에 비하여 작다. 그러나 법인자본주의의 완성기인 1975년에 이미 26.3%에 달하고 있다. 그 이후 증가추세는 거의 멈추고 20%대에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1990년과 1991년에는 각각 25.2%와 24.5%를 차지하고 있다.

이같이 日本 株式會社의 所有構造는 法人所有의 비중이 이례적으로 높은 독특한 형태를 이루고 있다. 특히 사업법인에 비하여 금융기관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같은 특징은 서구 선진국과의 비교에서도 명확히 들어난다.

美國 경우는 개인지분율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 1990년의 경우 미국의 주식시장에서 개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56.0%에 이르고 있다.⁸⁾ 그밖에 機關投資者의 역할도 무시할 수 없다. 사전연금기금 15.8%, 주정부퇴직연금 8.5%, Mutual Fund 6.6%, 그리고 생명보험과 기타 보험업이 5.8%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기관투자자의 비중은 36.6%에 이르고 있다. 이같은 기관투자자의 비중은 1975년과 1980년에 각각 24.5%와 24.7%에 불과하였으나 1985년에는 28.6%까지 증가하고 있다. 이같은 증가추세는 개인투자자의 하락현상(개인비중은 1975년 70.5%, 1988년과 1989년에 각각 70.7%, 그리고 65.8%)과는 대조적인 현상임에는 틀림이 없다. 특히 미국 優良企業 중에는 기관투자자의 소유비중이 60%부터 80%를 초과하는 기업도 있다. 미국의 대기업 56개 회사를 대상으로 실시된 최근의 조사결과는 70%에 달하는 기업들이 기관투자자가 지배주주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같이 美

8) 通産産業省 産業政策研究會, 『日美の企業行動比較』, 1990 참조.

〈表 3-1〉 上場會社の 所有者別 持株比率

(단위 : %)

연도	정부·지방 공공단체	금융기관	투자신탁	증권회사	사업법인등	개인	외국인 (법인+개인)
1949	2.8	9.9	-	12.6	5.6	69.1	-
1950	3.1	12.6	-	11.9	11.0	61.3	-
1955	0.4	19.5	4.1	7.9	13.2	53.1	1.8
1965	0.2	23.4	5.6	5.8	18.4	44.8	1.8
1975	0.2	34.5	1.6	1.4	26.3	33.5	2.6
1980	0.2	37.3	1.5	1.7	26.0	29.2	4.0
1985	0.8	40.9	1.3	2.0	24.1	25.2	5.7
1990	0.6	41.6	3.6	1.7	25.2	23.1	4.2
1991	0.6	41.5	3.2	1.5	24.5	23.2	5.4

주 : 1984년까지 주주수 기준

1985년 이후는 발행주식수 기준

자료 : 全國證券去來協議會, 『株式分布狀況調査』, 1992

〈表 3-2〉 金融機關의 持株比率

(단위 : %)

연도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1
금융기관	26.1	30.9	34.4	37.3	40.9	41.6	41.5
-은행·신탁은행 ^a	11.8	14.0	16.4	17.7	20.3	22.5	22.7
은행·신탁은행 ^b	-	-	-	17.3	19.6	21.6	21.7
-생명보험회사	9.2	11.1	11.5	12.5	13.5	13.2	13.2
-손해보험회사	3.3	4.0	4.7	4.9	4.5	4.1	4.0
-기타 금융기관	1.8	1.8	1.1	2.2	2.6	1.8	1.6

주 : a는 투자신탁분 제외

b는 투자신탁 및 연금신탁분 제외

자료 : 全國證券去來協議會, 『株式分布狀況調査』, 각년도

國의 자본시장은 日本과 대조적으로 개인과 기관투자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이다.

그렇다면 日本에서 金融機關과 事業法人에 의한 주식소유구조의 法人化 현상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는 금융기관과 사업법인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日本기업의 法人化 현상이 전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먼저 금융기관 중에서 가장 많은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상위 30개 기업을 살펴보면, 금융기관의 축을 형성하고 있는 13개 도시은행, 3개 장기신용은행, 7개 신탁은행, 10개 손해보험회사 및 12개 생명보험회사 중 상위기업 대부분이 30대 금융기관에 포함된다.⁹⁾(〈表 3-3〉참조)

예를 들면 日本최대의 생명보험회사인 日本生命保險會社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수는 총 1,166개사에 이르고 있다. 그중 지배주주에 해당하는 회사중 1위 기업수는 83개, 2위와 3위기업은 각각 113개 77개사에 이르고 있다. 나머지 생명보험회사, 도시은행 및 손해보험 등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라도 많은 사업법인에 대하여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이중 상당부분에 대하여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한편 事業法人은 그 비중 면에 있어서는 금융기관에 비하여 뒤떨어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關係회사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주식소유를 하고 있다.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들은 도요타자동차, 히타치제작소, 신일본제철 등과 같은 거대기업들이다. 결과적으로 日本의 주식소유구조는 압도적인 비율로 法人이 법인을 소유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특히 법인 중 금융기관의 소유비중이 무척 높은 것이 특색이다. 그렇다면 이같은 주식소유구조는 구체적

9) 日本 금융기관의 개요에 대해서는 『實踐ゼミナル 證券・金融・ファイナンス』, 東洋經濟新報社, 1987, P.4-10 참조.

〈表 3-3〉 所有株式數 上位 30社(金融機關 基準)

순위	회 사 명	지배주주 기업수			주식소유 기업수 합계
		1위	2위	3위	
1	일본생명보험	83	113	77	1,166
2	제일생명보험	48	38	52	732
3	미쓰비시신탁은행	26	58	57	1,154
4	스미토모신탁은행	33	93	80	1,166
5	일본흥업은행	23	45	64	647
6	스미토모생명보험	23	36	19	766
7	메이지생명보험	37	26	28	508
8	미쓰이신탁은행	24	34	43	1,064
9	사쿠라은행	26	61	96	906
10	동양신탁은행	11	25	34	942
11	제일권업은행	24	68	90	686
12	후지은행	35	55	97	673
13	야스다신탁은행	18	29	40	850
14	마이니찌생명보험	19	13	22	361
15	미쓰비시은행	29	41	74	615
16	일본장기신용은행	9	18	34	441
17	스미토모은행	11	39	72	509
18	三和은행	24	61	74	666
19	동경해상화재보험	7	15	13	477
20	다이와은행	17	26	33	453
21	동해은행	24	49	54	511
22	미쓰이생명보험	18	15	18	275
23	사쿠라은행	7	27	37	460
24	太陽생명보험	5	5	4	84
25	야스다생명보험	15	14	10	254
26	중앙신탁은행	10	25	28	723
27	야스다화재해상보험	9	11	12	336
28	千代田생명보험	8	14	13	181
29	일본채권신용은행	4	5	8	265
30	農林中金	3	3	11	210

자료 : 東洋經濟新報社, 『企業系列總覽 '93』, 1992. P. 75 재구성

〈表 3-4〉 所有株式數 上位 30社(事業法人 基準)

순위	회 사 명	지배주주 기업수			주식소유 기업수 합계
		1위	2위	3위	
1	도요타자동차	25	12	5	95
2	히타치제작소	27	2	2	51
3	신일본제철	22	11	8	94
4	마쓰시타전기산업	12	1	3	43
5	닛산자동차	28	4	3	72
6	미쓰비시상사	21	12	10	158
7	미쓰비시중공업	5	5	6	65
8	도시바	14	0	1	40
9	미쓰이물산	19	13	10	130
10	일본전기	15	4	0	44
11	스미토모상사	4	6	8	84
12	스미토모금속공업	10	3	1	45
13	G M	1	1	0	2
14	스미토모전기공업	10	1	2	36
15	마루베니	10	10	5	94
16	후지통신	13	3	0	29
17	아사히가라스	7	1	2	31
18	동경금행전철	11	1	1	18
19	미쓰비시전기	12	1	2	45
20	미쓰비시化成	9	2	0	34
21	후지전기	2	4	0	15
22	도요타자동차기	1	6	2	17
23	이토추상사	11	4	4	72
24	대성건설	3	0	2	33
25	고베제철소	8	4	1	34
26	스미토모화학공업	8	3	1	44
27	아사히化成공업	7	3	5	40
28	구보다	0	1	0	22
29	포드	1	0	0	1
30	近畿일본철도	7	1	0	15

자료 : 〈表 3-3〉과 동일

으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 보다 미시적인 관점에서 법인화현상의 실체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3-2. 企業集團의 所有構造

日本의 企業集團은 3대 舊財閥系 기업그룹과 3대 銀行系 기업그룹을 포함한 모두 6개 기업그룹을 말한다. 이것의 특징은 은행과 종합상사를 중심으로 광범위한 업종에 걸쳐서 다각화된 사업영역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흔히 특정 업종을 중심으로 垂直的統合 형식을 취한 기업그룹을 기업집단과 분리하여 獨立系 기업그룹으로 부른다. 기업집단의 소유구조는 그룹을 형성하는 멤버기업들이 서로가 다른 멤버기업의 주식을 교환하여 소유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여기서 멤버기업은 각 기업집단의 社長會 소속기업을 말한다.¹⁰⁾

기업집단내 멤버기업 사이에 이루어진 相互所有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세가지 지표를 이용할 수 있다. 첫째, 기업집단에 속하는 각각의 기업이 멤버기업에 의하여 소유되어지는 주식의 비율인 株式相互保有率을 들 수 있다. 이것은 평균적인 의미에서 기업집단의 멤버기업 사이에 어느 정도의 상호소유가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相互保有率은 기업집단내 각 회사가 멤버기업에 의하여 소유되어지는 주식수의 합계를 계산한 다음 이것이 발행주식 총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구한다. 이같은 비율을 각 기업집단에 속하는 멤버기업수로 나누어 株式相互保有率을 계산한다.

10) 社長會는 스미토모그룹의 白水會가 1951년을 전후하여 결성된것에 뿌리를 두고 있음. 원래 목적은 친목도모를 위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벌그룹의 재집결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그룹내 사업의 업무조정과 정보교환을 행하는 정례적인 모임으로 변화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음. 대개는 한 달에 한번꼴로 정례적인 모임을 갖고 있음.

미쓰이(三井)그룹의 경우 평균적으로 그룹내 발행주식 총수에서 19.46%가 멤버기업간 상호소유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나머지 80.54%가 미쓰이그룹에 속하는 24개 멤버기업 이외의 사업법인, 금융기관이나 개인 혹은 외국인에 의하여 소유되고 있다. 한편 미쓰비시그룹의 상호보유율은 35.45%로 기업집단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가지고 있다. 주식상호보유율 면에서 본 구재벌계와 은행계의 평균은 각각 27.46%와 15.82%이며, 6개 기업집단의 평균값은 21.64%이다.

둘째, 멤버기업들끼리 相互所有關係를 맺고 있는 기업의 비율을 나타내는것이 株式所有關係率이다. 주식소유관계율은 동일 기업내에서 가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업간 주식소유관계의 총수에서 실질적인 주식소유관계가 이루어진 비중을 나타낸다.

예를 들면, 미쓰이그룹의 멤버기업 24개사가 이를 수 있는 가상적인 상호소유관계 중에서 단지 59.55%에 해당하는 관계만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스미토모그룹의 경우는 주식소유관계율이 93.63%에 이르고 있다. 이는 주식상호보유율이 그다지 높지 않을지라도 대부분 멤버기업들이 주식을 서로 보유하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구재벌계기업의 주식소유관계율은 75.29%, 은행계의 주식소유관계율은 33.96%이다. 결과적으로 6대 기업집단의 평균값은 54.63%에 이르고 있다.

한편 1989년도(전상장기업 2,038개 회사)를 기준으로 할 때 소유주식 상위 30위사가 금융기관 혹은 비금융기관과 주식소유관계를 맺고 있는 비율은 각각 27.44%와 2.42%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주식상위를 점하고 있는 기업들의 이같은 비중을 미루어 볼 때 그룹내 멤버기업 사이의 상호소유관계가 비교적 널리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기업집단의 멤버기업이 동일 기업집단 멤버기업의 주식을 소

유하는 경우 1개 회사당 어느 정도의 지분율을 유지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가 平均持分率이다. 舊財閥系 평균지분율이 1.57%, 銀行系 평균이 1.27%, 결과적으로 6대 기업집단의 평균값은 1.42%에 불과하다. 이같은 사실을 미루어볼 때 기업집단내 특정기업이 독립적으로 그룹내 개개 회사에 미치는 영향력은 극히 제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미쓰비시그룹의 경우에 있어서 미쓰비시금속이 미쓰비시알루미늄의 67.7%를 소유하거나 히타치제작소가 히타치化成공업의 주식을 54.87% 소유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경우에 특정기업에 의한 지분율이 10%를 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한편 上場會社에 있어서 상위 1위부터 10위에 이르는 기업들의 평균지분율이 89년의 경우 3.69%이고 상위 11위부터 20위에 이르는 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0.24%에 불과하다. 이는 기업집단의 멤버기업이라 할지라도 멤버기업 중 특정 회사가 지나치게 많은 주식을 소

〈表 3-5〉 財閥系 企業그룹의 株式相互保有 現況(1989年 基準)

(단위 : %)

	주식상호보유율	주식소유관계율	평균지분율
미쓰이	19.46	59.55	1.42
미쓰비시	35.45	72.70	1.75
스미토모	27.46	93.63	1.54
구재벌계 평균	27.46	75.29	1.57
후요우	16.39	45.41	1.30
상와	16.46	26.99	1.43
제일권업	14.60	29.47	1.08
은행계 평균	15.82	33.96	1.27
6대기업집단 평균	21.64	54.63	1.42

자료 : 東洋經濟新報社, 「日本の6大企業集團-その組織と行動-」, 1992, P.12-18 참조

유함으로서 지배적인 위치를 확보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지 않음을 나타낸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기업집단의 멤버기업들은 각 회사가 그룹내 특정회사에 대하여 지배적인 지위를 허용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상호소유관계를 유지하는 多角的 所有形態를 취하고 있음을 뜻한다.

멤버기업들 중에도 주식소유의 비중이 높은 核心企業들이 있다. 핵심기업은 주로 메인뱅크에 해당하는 도시은행과 그밖에 계열용자를 뒷받침하는 신탁은행, 생명보험, 그리고 해상화재보험 등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그밖에 사업법인 중에서 핵심기업은 綜合商社와 그룹의 중요한 事業法人이 포함된다. (<表 3-6>와 <表 3-7> 참조)

예를 들어, 미쓰이그룹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주식상위 10개사 중에서 상위 1위부터 4위까지가 모두 金融機關이다. 그중 1위는 미쓰이생명(3.42%), 2위 사쿠라은행(3.42%), 3위 미쓰이신탁은행(2.70%), 4위 미쓰이해상화재보험(1.68%) 순이다. 都市銀行인 사쿠라은행이 미쓰이생명과 함께 가장 많은 주식을 소유하면서 나머지 系列融資를 뒷받침하는 금융기관이 이러한 소유구조를 보장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를 뒤이어 미쓰이물산(0.87%), 미쓰이부동산(0.60%), 도시바(0.58%), 그리고 도요타자동차(0.56%) 순서이다. 금융기관과 아울러 미쓰이그룹의 사장회 소속기업 중에서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종합상사, 부동산, 그리고 주요 제조업이 그룹 所有構造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미쓰비시그룹 역시 메이지생명, 미쓰비시신탁은행, 미쓰비시은행, 동경해상화재보험 등 4개 그룹 멤버기업들이 소유구조 면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밖에 미쓰비시중공업, 미쓰비시상사, 아사히가라스, 미쓰비시地所 등 종합상사, 부동산, 주요 제조업 기업들이 소유면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같은 그룹소유구조의 특징은 다른 기업그룹에서도 거의 유사하

게 관찰된다. 다시 말하면 주식소유 순위 면에서 보면 다소 차이가 존재할지 모르나 생명보험과 도시은행을 중심으로 하는 금융기관과 간판급 사업법인이 核心企業을 형성하고 있다.

〈表 3-6〉 3대 舊財閥系 멤버企業中 株式占有 上位 10社 (1991年 平均持株率)

(단위 : %)

순위	미쓰이그룹	미쓰비시그룹	스미토모그룹
1	미쓰이생명 (3.42)	메이지생명 (5.00)	스미토모생명 (6.01)
2	사쿠라은행 (3.42)	미쓰비시신탁은행(4.45)	스미토모신탁은행(4.78)
3	미쓰이신탁은행(2.70)	미쓰비시은행 (3.78)	스미토모은행 (3.55)
4	미쓰이해상화재(1.68)	동경해상화재 (2.80)	스미토모상사 (1.86)
5	미쓰이불산 (0.87)	미쓰비시중공업 (2.43)	스미토모해상화재(1.39)
6	미쓰이부동산 (0.60)	미쓰비시상사 (1.87)	스미토모금속공업(1.26)
7	도시바 (0.58)	아사히가라스 (0.95)	일본전기 (1.26)
8	도요타자동차 (0.56)	미쓰비시지소 (0.79)	스미토모화학공업(0.91)
9	도레이 (0.46)	미쓰비시마터 (0.73)	스미토모전기공업(0.82)
10	미쓰이조선 (0.39)	미쓰비시화성 (0.66)	스미토모금속광업(0.70)
		미쓰비시전기 (0.66)	

〈表 3-7〉 3대 銀行系 멤버企業中 株式占有 上位 10社 (1991年 平均持株率)

(단위 : %)

순위	후지우그룹	상와그룹	제일권업그룹
1	후지은행 (3.70)	일본생명 (3.86)	제일권업은행 (3.57)
2	야스다생명 (2.78)	상와은행 (3.51)	아사히생명 (3.29)
3	야스다신탁은행(2.77)	동양신탁은행 (2.46)	후지통운 (0.88)
4	야스다해상화재(1.69)	히타치제작소 (2.30)	이토추상사 (0.40)
5	마루베니 (0.66)	대동생명 (0.76)	교하전기공업 (0.40)
6	닛산자동차 (0.63)	세키스이화학 (0.56)	가와사키제철 (0.36)
7	대성건설 (0.42)	일상정압 (0.34)	교하전기금속 (0.27)
8	NKK (0.37)	대림조 (0.29)	가와사키중공업 (0.25)
9	구보타 (0.24)	일본통운 (0.19)	후지통운 (0.24)
10	일본세멘트 (0.30)	다이한공업 (0.18)	세키스이건설 (0.20)

한편 그룹별 所有構造의 특성을 더욱 자세히 알기 위하여 주식소유 상위 10대 기업이외의 소유가 어떤 모습을 지니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멤버기업들과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기업들의 주식소유 실태를 비교하여야 한다.(<表 3-8> 참조)

예를 들면, 미쓰이 그룹의 경우 멤버기업중 株式所有 순위 면에서 상위 50위에 들어가는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비중은 평균 61.05%이다. 여기서 50위까지를 분석의 편의상 대주주라 부르면 나머지 소액을 투자하는 주주의 비중은 38.95%에 이르고 있다.

이중 미쓰이 그룹 멤버기업의 비중은 株主數 기준(상위 50위 주주가 50위까지의 주주총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18.26%, 지분율 기준(상위 50위 주주가 50위까지의 총지분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4.37%를 차지하고 있다. 그밖에 멤버기업 이외에 安定株主 역할을 담당하는 다른 기업집단 멤버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주주수 기준으로 21.56%, 지분율 기준으로 27.50%를 차지하고 있다.

이같이 미쓰이 그룹은 멤버기업과 다른 기업집단의 멤버기업들로부터 확실히 경영권을 보장받을 정도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즉 미쓰이 그룹의 경우 주주수 기준 39.82%(18.26%+21.56%), 지분율 기준으로 61.87%(34.37%+27.50%)를 확보하고 있는 셈이다. 이같은 상황은 그룹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거의 유사하다.

한편 6대 기업집단의 평균값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멤버기업중 주식소유 순위 면에서 상위 50위에 들어가는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비중은 평균 65.10%이다. 멤버기업의 비중은 株主數기준과 지분율 기준으로 각각 18.57%와 35.01%이다. 그밖에 다른 기업집단의 멤버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株主數기준과 지분율 기준으로 각각 23.99%와 26.41%이다. 여기서 금융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9.45%와 23.83%로 압도적이다. 결과적으로 6대 기업집단은 멤버기업과 다른 기업집단의 멤버기업들로부터 확실한 경영권 보장을 받을

정도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예를 들면, 주주수 기준으로 42.56%, 지분율 기준으로 50.24%이다.

(表 3-8) 主要 企業集團의 大株主(上位 50位) 所有構造 (1991年 基準)

(단위 : %)

	미쓰이	미쓰비시	스미토모	구재벌계 평균	6 대기업 집단평균
주주상위 1-50위 지분율	61.05	68.79	60.61	63.48	65.01
동일기업집단내 멤버기업	18.26 (34.37)	26.40 (52.88)	25.79 (48.63)	23.48 (45.29)	18.57 (35.01)
다른기업집단의 멤버기업	21.56 (27.50)	19.88 (17.39)	20.63 (21.09)	20.69 (21.99)	23.99 (26.41)
국내금융기관	17.74 (25.35)	16.73 (15.88)	15.16 (18.05)	16.54 (19.76)	19.45 (23.83)
기타	60.17 (38.14)	53.72 (29.72)	53.58 (30.28)	55.82 (32.71)	57.44 (38.58)
국내금융기관	34.87 (26.10)	34.31 (19.28)	29.89 (19.41)	33.02 (21.60)	33.74 (24.04)
국내사업회사	14.61 (7.22)	10.36 (4.12)	14.95 (7.34)	13.31 (6.23)	13.46 (8.16)
외국회사	4.96 (1.71)	3.76 (4.75)	5.37 (1.73)	4.70 (2.73)	5.03 (3.46)
기타	5.74 (3.10)	5.30 (1.58)	3.37 (1.81)	4.80 (2.16)	5.22 (2.94)

주 : 1. 주주상위 50위 지분율 = (기업집단 멤버기업의 주주중 상위 50위를 차지하는 주주의 지분율 합계/생명보험회사를 제외한 각 기업집단의 멤버기업수) X 100.

2. 각 난에서 위의 숫자는 주주수 순위로부터 본 주주상위 50위가 차지하는 비중. 나머지 아래의 ()는 지분율 순위로부터 본 주주 상위 50위 비중.

3. 株主數 기준은 각 항에 속하는 주주가 주식상위 50위의 주식총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4. 持分率 기준은 각항에 속하는 주주의 지분율이 주식상위 50위 전부의 지분율 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자료 : 公正去來委員會事務局, 「日本の6大企業集團-その組織と行動-」, 東洋經濟新報社, 1992.

요컨대 기업집단은 동일 기업집단내 멤버기업들 사이의 상호출자와 다른 기업집단의 멤버기업들에 의한 상호출자에 의하여 경영권을 보장받는 형식의 소유구조를 가지고 있다. 특히 소유구조 면에서 보조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다른 멤버기업 중에서도 금융법인의 비중이 압도적이다. 이러한 사실은 법인자본주의의 핵심적인 위치는 역시 금융자본이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업집단의 소유구조에는 生命保險, 都市銀行, 信託銀行, 海上火災保險, 그리고 종합상사와 그룹의 주요 제조기업이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들의 소유구조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지니고 있을까. 이러한 정보는 법인자본주의의 특징에 대한 주요한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메인뱅크, 종합상사, 주요 제조기업, 그리고 생명보험의 소유구조를 살펴본다.

메인뱅크의 所有構造

미쓰이 그룹의 메인뱅크에 해당하는 사쿠라이은행의 주식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相互會社인 日本生命保險으로 3.5%를 소유하고 있다. 일본생명보험은 은행계 재벌인 상와그룹의 멤버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독립적인 성격이 강하다. 다음으로 멤버기업인 미쓰이생명보험(3.5%)이 위치하고 있다. 그밖에 태양생명보험(3.5%)이나 제일생명보험(2.9%)은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독립기업이다. 나머지 도요타자동차(2.5%), 도시바(1.4%), 미쓰이신탁은행(1.2%), 미쓰이해상화재(1.0%), 그리고 미쓰이부동산은 미쓰이 그룹의 멤버기업들이다. 다만 메이지생명보험만이 미쓰비시 그룹의 멤버기업에 해당한다.(〈表 3-9〉 참조)

미쓰비시 그룹의 미쓰비시은행의 경우 상위 10사중 6개사가 미쓰비시 그룹의 멤버기업에 해당한다. 1위와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메이

지생명보험(5.8%)과 동경해상화재(4.3%)는 멤버기업의 축을 형성하는 금융법인에 해당한다. 나머지 미쓰비시중공업, 미쓰비시신탁은행, 미쓰비시상사, 그리고 아사히가라스가 멤버기업의 사업법인에 해당한다. 10개사 중 나머지 3개사인 제일생명보험, 태양생명보험, 그리고 新日本製鐵 등이 獨立系 企業에 속하며 일본생명보험은 상와그룹에 속하는 멤버기업이다. 한편 스미토모그룹의 스미토모은행의 경우는 스미토모생명보험, 스미토모신탁은행, 스미토모상사, 스미토모해상화재 등의 멤버기업들이 지배주주를 차지하고 있다. 그밖에 다른 기업집단의 금융법인이나 사업법인이 지배구조를 보강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을 미루어 볼 때 메인뱅크를 소유하는 支配株主는 단연 日本生命保險을 중심으로 하는 주요한 生命保險會社를 들 수 있다. 다음으로 그룹내에서 메인뱅크를 보조하는 위치에 있는 신탁은

(表 3-9) 舊財閥系 메인뱅크의 所有 現況

순위	사쿠라은행 (미쓰이그룹)	미쓰비시은행 (미쓰비시그룹)	스미토모은행 (스미토모그룹)
1	일본생명보험 (3.5)	메이지생명보험 (5.8)	스미토모생명보험(6.0)
2	미쓰이생명보험(3.5)	동경해상화재 (4.3)	일본생명보험 (4.4)
3	太陽생명보험 (3.5)	제일생명보험 (3.5)	마쓰시타전기산업(2.7)
4	제일생명보험 (2.9)	일본생명보험 (3.1)	스미토모신탁은행(2.4)
5	도요타자동차 (2.5)	미쓰비시중공업 (3.0)	산요전기 (2.0)
6	도시바 (1.4)	미쓰비시신탁은행(1.8)	제일생명보험 (1.9)
7	미쓰이신탁은행(1.2)	太陽생명보험 (1.7)	스미토모상사 (1.8)
8	미쓰이해상화재(1.0)	미쓰비시상사 (1.7)	鹿島건설 (1.7)
9	메이지생명보험(1.0)	신일본제철 (1.6)	스미토모해상화재(1.7)
10	미쓰이부동산 (0.9)	아사히가라스 (1.4)	신일본제철 (1.7)

자료 : 東洋經濟新報社, 『會社 四季報-1993年 新春-』, 1993.

행, 해상화재보험 등과 그룹내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제조업 혹은 부동산 부문의 巨大企業을 들 수 있다. 끝으로 여타그룹의 거대 사업법인 혹은 금융기관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綜合商社의 所有構造

미쓰이 그룹의 종합상사인 미쓰이物産을 그룹내 5개 금융기관 즉, 미쓰이생명보험, 사쿠라은행, 미쓰이신탁은행, 미쓰이해상화재보험, 그리고 미쓰이신탁이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表 3-10> 참조) 그밖에 후요우그룹의 메인뱅크인 후지은행, 상와그룹의 멤버기업인 일본생명보험, 스미토모그룹의 멤버기업인 스미토모신탁등과 독립 거대기업에 속하는 동경은행과 제일생명보험이 지배주주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미쓰비시상사와 스미토모상사도 미쓰이物産과 비슷한 소유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룹내 金融法人이 중심이 되고 나머지 사업법인이 종

<表 3-10> 舊財關係 綜合商社의 所有 現況

순위	미쓰이물산	미쓰비시상사	스미토모상사
1	미쓰이생명보험(4.7)	동경해상화재 (6.1)	스미토모신탁 (5.7)
2	사쿠라은행 (4.5)	메이지생명보험(6.0)	스미토모생명 (5.1)
3	미쓰이신탁은행(3.9)	미쓰비시신탁 (5.3)	스미토모은행 (4.8)
4	후지은행 (3.6)	미쓰비시은행 (4.9)	동경은행 (3.8)
5	동경은행 (2.9)	동경은행 (4.8)	일본전기 (3.7)
6	일본생명보험 (2.9)	제일권업은행 (3.4)	스미토모금속 (2.9)
7	미쓰이해상화재(2.7)	일본생명보험 (3.1)	스미토모해상 (2.8)
8	스미토모신탁 (2.2)	미쓰비시중공업(3.1)	일본흥업은행 (1.9)
9	미쓰비시신탁 (2.1)	제일생명보험 (2.7)	미쓰비시신탁 (1.7)
10	제일생명보험 (1.9)	三和은행 (2.4)	스미토모금속광업(1.6)

자료 : <表 3-9>와 동일.

합상사의 소유구조를 보조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여기에 다른 기업집단의 멤버 金融機關과 獨立系 금융기관이 소유구조를 뒷받침하고 있다.

주요 製造企業의 所有構造

미쓰이 그룹의 멤버기업 중에서 巨大企業에 해당하는 도시바(東芝)의 1위 지배주주는 독립계 금융기업인 제일생명보험(3.9%)이다. (〈表 3-11〉 참조) 이를 뒤이어 멤버기업에 해당하는 사쿠라은행(3.7%), 미쓰이생명보험(2.6%), 미쓰이신탁은행(2.2%) 등이 지배주주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외에 상와그룹에 속하는 일본생명보험(3.5%)과 스미토모계열의 스미토모신탁은행(2.0%), 나머지 독립계 금융기관 등이 소유구조를 뒷받침하고 있다. 가장 큰 특징은 주식소유 상위 10사 모두가 金融法人에 해당하며 事業法人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 나머지 미쓰비시전기와 일본전기의 경우도 비슷한 형

〈表 3-11〉 멤버企業(舊財關係)中 主要 製造企業의 所有 現況

순위	도 시 바	미쓰비시전기	일본전기
1	제일생명보험 (3.9)	메이지생명보험(4.1)	스미토모생명 (6.7)
2	사쿠라은행 (3.7)	일본생명보험 (3.8)	스미토모신탁 (5.5)
3	일본생명보험 (3.5)	미쓰비시신탁 (3.8)	스미토모은행 (4.9)
4	미쓰이생명보험(2.6)	미쓰비시은행 (3.4)	일본생명보험 (3.6)
5	미쓰이신탁은행(2.2)	自社社員持株會(3.2)	제일생명보험 (3.2)
6	미쓰비시신탁 (2.2)	스미토모신탁 (2.8)	스미토모해상 (2.6)
7	스미토모신탁 (2.0)	미쓰이신탁은행(2.7)	스미토모전기공업(2.1)
8	일본화재해상 (1.8)	스미토모생명 (1.8)	스미토모상사 (2.1)
9	일본장기신용 (1.8)	제일생명보험 (1.7)	미쓰비시신탁 (2.0)
10	동해은행 (1.8)	農林中央金庫 (1.7)	동양신탁은행 (1.7)

자료 : 〈表 3-9〉와 동일.

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주목할 만한 점은 미쓰비시전기의 경우에서 볼 수 있는 自社社員持株會의 존재를 들 수 있다.

生命保險¹¹⁾

일본의 生命保險會社(內國會社) 27개사 가운데 11개 회사가 주식 회사이고 나머지 16개사가 相互會社이다. 회사수 면에서 보면 상호회사는 60% 정도에 지나지 않지만 일본생명, 제일생명, 스미토모생명, 메이지생명보험회사 등 대부분의 대형 생명보험회사가 相互會社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예를 들면, 수입보험료와 총자산(1990년) 기준으로 보면 상호회사의 비중은 각각 92%와 94%이다.

相互會社는 일반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營利保險과 달리 相互保險을 영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여기서 영리보험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중간기관이 개입하여 보험계약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보험을 말한다. 한편 相互保險은 중간기관이 개입하지 않고 보험을 원하는 자가 모여서 스스로 보험회사와 같은 保險者 기능을 수행하는 동시에 保險契約者 역할도 맡는 보험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相互會社에서 회사의 구성원이 되는 '社員'은 개인으로서 보험계약자가 됨과 동시에 전체로는 회사의 출자자 역할이라는 이중적인 성격을 지니게 된다. 이것은 보험계약자가 내는 보험료가 회사의 出資金 성격을 지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호회사는 사원에 의하여 회사가 소유되고 운영된다는 특징을 지니게 된다. 한편 사원의 의사를 대변하기 위하여 社員總代委員會가 감사역과 이사회 그리고 평위원회의 상부기관으로 존재한다. 그리고 사원총대원은 사원들의 직접투표에 의하여 선출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사원들의 참여의식이 낮기 때문에 실질적인 경영권은 社長을 중심으로 하는

11) 住友生命保險總合研究所 編, 『日本の生命保險會社』, 1992, P.33-56 참조.

경영층에 의하여 좌우되고 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相互會社의 성격을 지닌 일본의 생명보험은 機關投資家의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생명보험의 소유가 직원들에 의하여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주주의 역할을 담당하는 기능을 맡는다는 책임이라 할 수 있다.

3-3. 獨立系 企業그룹의 所有構造

日本の 기업그룹은 몇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今井賢一·後藤의 분류에 따르면 일본의 기업그룹은 '系列的'기업그룹, '機能的'기업그룹, '役割體系的'기업그룹, 그리고 '保險的'기업그룹으로 분류된다.¹²⁾ 기업그룹 중에서 대형 프로젝트에 따르는 위험분산과 보완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결성되는 기업그룹은 '기능적'기업그룹과 '보험적'기업그룹이다. 한편 영속적인 조직을 가지면서 오랜 기간 동안 존재하는 기업그룹은 '系列的'기업그룹과 '役割體系的'기업그룹을 들 수 있다.

'계열적'기업그룹은 도요타자동차와 新日本製鐵과 같이 특정 사업 부문을 중심으로 垂直系列化된 사업구조를 유지하는 기업들의 집합을 말한다. 이러한 기업집단에는 반드시 사업영역 중 주요 부문을 차지하는 母企業이 존재하고 이들 모기업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 많은 系列會社들이 있다. 이들 系列會社중 많은 기업들은 모기업에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흔히 '계열적'기업그룹을 獨立系 企業그룹이라 부르며 그중에서 母企業을 獨立系 巨大企業이라 한다.

12) 今井賢一·後藤, 『企業グループの實證研究(I)』, 日本經濟データ開發センター, 1977, P.6-1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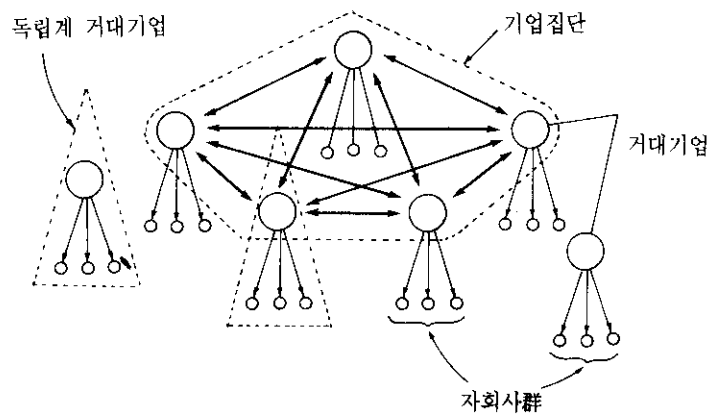
‘역할체계적’기업그룹은 흔히 3대 舊財閥系와 3대 銀行系를 포함하는 기업집단을 말한다. 기업집단은 초기에는 ‘계열적’기업그룹 혹은 「기능적」기업그룹에서부터 출발하였으나 점점 다양한 업종에 진출하여 人力과 資本交流를 이용하여 일정한 連帶關係를 형성하게 된다. 특히 기업집단의 멤버기업들은 社長會 등을 중심으로 공동목적을 위하여 기업사이에 일정한 역할분담을 담당하게 된다.

企業集團과 獨立系 巨大企業그룹의 관계는 서로 완전히 독립된 것은 아니다. (<그림 4-1> 참조) 기업집단과 독립계 巨大企業그룹은 서로 중층적인 구조를 가지면서 병존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기업집단내 멤버기업들은 상호소유를 통하여 일정한 연대관계를 가지고 있다. 기업집단내 많은 거대기업들은 멤버기업의 성격을 지니면서 동시에 독립계 기업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즉 많은 멤버기업들이 특정 사업부문을 중심으로 피라미드형의 수직계열화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계열기업들은 모기업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기업집단의 멤버기업중 일부 기업들은 獨立系 巨大企業그룹과 다른형태를 띠기도 한다. 아울러 독립계 거대기업들 중에는 기업집단의 멤버기업들이 아닌 기업도 다수 존재한다. 그들은 기업집단과는 완전히 독립되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독립계 거대기업그룹은 기업집단의 멤버기업들 중 일부의 기업집단과 아무런 관계를 갖지않는 기업그룹으로 구성되어 있다.

東洋經濟新報社가 매년 발표하는 40대 獨立系 企業그룹을 살펴보면 미쓰이그룹 4개사, 미쓰비시그룹 6개사, 스미토모그룹 3개사, 후요우그룹 4개사, 상와그룹 3개사, 그리고 제일권업그룹 2개사로 6대 기업집단에 속하는 멤버기업은 총 22개사에 이르고 있다. 이들을 제외하고 기업집단과 아무런 관계를 갖지않은 순수 독립계 거대기업그룹은 18개사이다.

〈그림 4-1〉 日本의 企業集團과 獨立系 巨大企業그룹



자료 : 坂本和一·下谷政弘, 『現代日本の企業グループ-「親·子關係型」綜合の分-』, 東洋經濟新報社, 1987, 〈그림 0-1〉 인용.

주 : ↔는 주식상호소유관계, →는 주식의 일방적 소유관계.

獨立系 企業그룹의 所有構造를 살펴보기 위하여 잘 알려진 두개의 거대기업을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綜合家電業體인 마쓰시타전기산업은 기업집단과는 아무런 관련을 맺고 있지 않은 독립계 기업그룹에 해당한다. 나머지 통신정보종합메이커인 日本電氣는 스미토모그룹의 멤버기업에 해당한다.

먼저 마쓰시타그룹의 巨大企業에 해당하는 마쓰시타電氣産業은 스미토모그룹 4개사, 상와그룹 1개사, 미쓰비시그룹 2개사, 나머지는 독립기업들이 10대 지배주주를 구성하고 있다. 스미토모계 금융기관들이 1위와 2위를 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다른 기업집단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表 3-12〉 40代 獨立系 企業그룹

기업명	멤버 기업집단	자회사 및 관련회사수	관계회사 투융자율	관계회사 주식보유율
대성건설	후요우그룹	51	4.45	27.91
미세와홈	-	121	18.85	89.51
기린맥주	미쓰비시그룹	72	4.40	32.70
아지노모토	-	118	34.21	81.72
동양방직	-	87	13.57	45.21
데이진	상와그룹	77	12.55	37.25
도레이	미쓰이그룹	116	11.61	56.38
아사히化成	제일권업그룹	176	17.12	61.58
스미토모화학공업	스미토모그룹	122	11.36	47.38
미쓰비시化成	미쓰비시그룹	126	16.21	58.77
신에츠화학공업	-	62	19.86	51.07
세키스이화학공업	상와그룹	152	36.72	80.94
일본석유	-	60	7.28	55.34
아사히가라스	미쓰비시그룹	180	12.24	45.24
신일본제철	-	195	6.27	33.36
N K K	-	138	4.85	39.69
스미토모금속공업	스미토모그룹	157	8.79	47.02
고베제철소	상와그룹	134	7.30	37.58
히타치제작소	후요우그룹	242	8.71	72.03
도시바	미쓰이그룹	255	11.52	75.30
일본전기	스미토모그룹	198	18.18	67.47
후지통신	제일권업그룹	196	19.68	86.20
마쓰시타전기	-	385	32.98	90.64
소니	-	114	44.43	97.60
미쓰비시중공업	미쓰비시그룹	182	4.33	31.02
닛산자동차	후요우그룹	274	32.04	69.41
도요타자동차	미쓰이그룹	193	16.19	76.32
혼다技研工業	-	295	21.79	88.78
캐논	후요우그룹	62	19.25	82.33
미쓰이물산	미쓰이그룹	736	11.60	58.81
핫토리세이코	-	55	26.02	57.25
미쓰비시상사	미쓰비시그룹	671	12.60	48.54
다이에	-	130	18.11	73.48
이토요카堂	-	23	15.44	80.31
올림푸스	-	91	6.67	85.57
미쓰이부동산	미쓰이그룹	85	4.91	60.52
세이후철도	-	22	15.11	90.62
동경금행전철	-	125	8.88	45.07
일본郵船	미쓰비시그룹	235	15.85	34.40
N T T	-	152	0.71	50.10

주 : 관계회사투융자율은 친회사의 총자산에서 관계회사투융자액(주식, 사채, 출자금, 대부금)의 비율, 관계회사주식소유율은 친회사의 보유주식(액면가)에서 관계회사가 점하는 비중. 기준년도는 1991년 6월.

자료 : 東洋經濟新報社, 『企業系列總覽 '92』, P.54 참조.

한편 日本電氣그룹의 巨大企業 日本電氣의 경우 스미토모그룹의 멤버기업 6개사가 10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상와그룹 3개사 그리고 미쓰비시그룹 1개사가 10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기업집단의 멤버기업의 경우는 멤버기업중 다른 기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해당 기업집단의 멤버 금융기관이 지배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

〈表 3-13〉 主要 獨立 巨大企業의 所有 現況

마쓰시타전기		일본 전기	
1	스미토모은행 (4.6)	스미토모생명 (6.7)	
2	스미토모생명 (4.2)	스미토모신탁 (5.5)	
3	일본생명보험 (3.9)	스미토모은행 (4.9)	
4	마쓰시타興産 (3.4)	일본생명보험 (3.6)	
5	아사히은행 (2.4)	제일생명보험 (3.2)	
6	스미토모신탁 (2.2)	스미토모해상 (2.6)	
7	스미토모해상 (1.7)	스미토모전기공업 (2.1)	
8	미쓰비시신탁 (1.5)	스미토모상사 (2.1)	
9	동경해상화재 (1.3)	미쓰비시신탁 (2.0)	
10	일본흥업은행 (1.2)	동양신탁은행 (1.7)	
	소수특정지지주수 (27.83)		(36.12)
	-1-10위 지주수 (27.00)		(36.10)
	-임원 지주수 (0.82)		(0.02)
	부동주수 (22.42)		(19.88)
	외국인주주수 (10.85)		(10.70)
	투자신탁주주수 (2.40)		(4.65)
	연금신탁주주수 (0.96)		(1.55)
	종업원지주회주수 (0.92)		(0.70)

자료 : 〈表 3-9〉 참조.

마쓰시타전기산업

마쓰시타電氣産業은 자본금 규모 1,963억 8,600만엔, 종업원 49,762인 그리고 매출액 4조 9,947억엔(92년 3월 기준)에 달하는 세계적인

종합가전메이커이다. 마쓰시타전기산업은 1935년 12월 소켓을 제조하는 소기업에서 출발하여 종합가전메이커로 성공한 기업으로 현재는 종합전자메이커로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

현재 마쓰시타그룹의 事業內容은 영상기기부문 21%, 음향기기부문 6.6%, 가정전화기기부문 14.9%, 정보·산업기기부문 25.1%, 전자부품부문 17.1%, 전지·난방관련기기부문 6.1%, 그밖에 기타부문이 9.1%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 관련기업들은 세가지 유형으로 만들어지게 된다.

첫째는 사업본부제 중에서 우수한 본부가 분리하여 독립법인으로 만들어지게 된 마쓰시타電子工業, 마쓰시타電工, 마쓰시타通信工業 등을 들 수 있다.¹³⁾ 둘째는 하청기업이나 거래선 가운데 재편성된 기업으로 마쓰시타精工과 마쓰시타冷機를 들 수 있다. 그밖에 日本빅타와 미야타(宮田)공업 등은 경영부진으로 마쓰시타그룹이 개입하여 계열사로 편입된 경우이다. 이같이 주요 계열사를 포함하여 마쓰시타그룹의 관련회사는 92년 3월말을 기준으로 301개사에 달하고 있다.

주요 계열기업의 사업분야와 소유구조는 母企業이 계열기업에 대하여 행하고 있는 出資比率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表 3-14〉, 〈表 3-15〉 참조) 모기업과 주요 계열기업의 관계는 일방적인 관계에 가깝다. 즉 모기업이 압도적인 비율로 계열기업의 지분을 소유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같은 資本關係에 기초하여 모기업과 계열기업의 관계는 상호 대등한 관계라기보다는 모기업이 계열기업에 비하여 우월한 지위에 있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예를 들면, 마쓰시타전기산업의 주요 계열사인 마쓰시타電工, 일본빅타, 그리고 마쓰시타壽電工의 소유구조를 살펴보자. 6社 모두에서

13) 大園友和, 『企業系列と業界地圖』, 일본실업출판사, 1992, P.28-29 참조.

〈表 3-14〉 마쓰시타그룹의 主要 系列企業

사업부문	기업명	출자비율	사업내용
가전부문	마쓰시타冷機	51.8(상장)	냉장고, 자판기, 식품기기
	朝日내셔널조명	25.5(상장)	조명, 인테리어
	마쓰시타電工	32.5(상장)	조명, 정보기기, 주택건설
영상음향	일본빅타	52.5(상장)	영상, 음향기기
	마쓰시타壽전자공업	57.7(상장)	VTR, 음향, 난방
	규슈마쓰시타전기	50.5(상장)	정보, 영상, 음향, 부품
	M C A inc.	100.0	영화, 음악레코더, 소매업
	데이체크	64.7	레코더, 테이프
정보통신	마쓰시타통신공업	56.7(상장)	통신, 자동차기기, OA
	마쓰시타전송	60.0	팩시밀리
산업기기	마쓰시타精工	59.1(상장)	냉난방공조기기
	마쓰시타산업기기	100.0	산업기기, FA
	若山정밀공업	46.9	콘프레서
전자부품	마쓰시타전자공업	65.0	반도체, 전구, 브라운관
	마쓰시타전자부품	98.3	전자부품, 전자재료
	마쓰시타전자공업	97.6	전자부품
건설	마쓰시타住設기기	100.0	전기, 가스, 석유에 의한 住設
	마쓰시타興産	31.0	부동산개발
	내셔널주택산업	26.4	주택, 주택자재
기타	宮田공업	43.7	자전거, 소화기
	마쓰시타물류창고	30.0	물류, 창고
	내셔널증권	22.0	증권
	내셔널리스	100.0	리스
	내셔널자전거공업	83.0	자전거

자료 : 大園友和(1992)

〈表 3-15〉 마쓰시타그룹 主要 系列會社の 所有構造

마쓰시타電工	일본빅타	마쓰시타壽電工
1 마쓰시타전기 (32.4)	마쓰시타전기 (52.4)	마쓰시타전기 (57.6)
2 스미토모은행 (4.2)	제일생명보험 (3.5)	스미토모은행 (2.8)
3 사쿠라은행 (4.2)	마쓰시타부동산 (3.3)	백십사은행 (2.6)
4 일본생명보험 (3.4)	스미토모은행 (1.9)	스미토모신탁 (2.2)
5 동해은행 (3.0)	일본흥업은행 (1.8)	스미토모생명 (1.5)
마쓰시타通債	규슈마쓰시타전기	마쓰시타精工
1 마쓰시타전기 (56.4)	마쓰시타전기 (51.1)	마쓰시타전기 (59.0)
2 스미토모신탁 (4.2)	스미토모신탁 (4.7)	스미토모은행 (2.9)
3 미쓰비시신탁 (2.4)	스미토모은행 (3.3)	스미토모해상 (2.7)
4 동양신탁 (2.2)	미쓰비시신탁 (2.0)	일본생명보험 (1.8)
5 미쓰이신탁 (1.3)	미쓰이신탁 (2.0)	스미토모생명 (1.7)

자료 : 〈표 3-9〉 동일.

母企業인 마쓰시타전기산업의 출자비율은 압도적이다. 마쓰시타電工을 제외한 모든 계열기업의 경우 마쓰시타전기산업의 출자비율은 50%를 넘고 있다. 그밖에 금융기관이 모기업에 해당하는 마쓰시타전기산업의 소유구조를 지원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獨立系 企業그룹의 경우 모기업과 계열기업 사이의 관계는 모기업에 의한 계열기업의 일방적인 지배형식을 취하고 있다.

日本電氣(NEC)

日本電氣는 자본금 규모 1,882억 9,700만엔, 종업원 38,487인 거대 기업으로 C & C(컴퓨터와 커뮤니케이션의 融合)를 그룹의 경영철학으로 삼고 있다. 일본전기는 현재 통신기 분야 세계 5위, 컴퓨터 분야 세계 4위, 그리고 반도체 분야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세가지 重點事業을 축으로 하는 사업구성은 매출액 기준으로 볼 때 통신기기부문 29%, 컴퓨터부문 47%, 電子디바이스 20% 그리고 홈일렉

〈表 3-16〉 日本電氣그룹의 主要 系列企業

반도체·부품	통신·정보기기	소프트웨어
山形일본전기 (100)	東北일본전기 (100)	일본전기소프트웨어 (100)
秋田일본전기 (100)	米澤일본전기 (100)	日電비즈니스시스템 (100)
福井일본전기 (50)	宮城일본전기 (100)	관서일본전기소프트웨어(100)
富山일본전기 (100)	福島일본전기 (100)	日電도시바정보시스템 (60)
關西일본전기 (100)	次城일본전기 (100)	NEC아베뉴 (100)
廣島일본전기 (100)	郡馬일본전기 (97)	가전
山口일본전기 (100)	奇玉일본전기 (100)	일전홈엘렉트로닉스 (100)
九州일본전기 (100)	신갈일본전기 (100)	나가노일본전기 (100)
福岡일본전기 (100)	정강일본전기 (100)	
熊本일본전기 (100)	兵庫일본전기 (100)	기타
大分일본전기 (100)	日通工 (34)	일본전기精器 (35)
일본전기 (100)	동양통신기 (39)	일본전기정보서비스 (100)
일본항공전자 (50)	安藤전기 (50)	일본전기필드서비스 (100)
일본전기가소자 (42)	안리슨 (26)	일전물류센터 (100)
토킹 (41)	일본아비오닉스(50)	일전엔지니어링 (100)
多摩전기공업 (60)		일전팩토리엔지니어 (100)
해외		일본전기三榮 (98)
NEC USA (100)		일본전기시스템건설 (52)
NEC AMERICA (100)		일전아네르바 (100)
NEC ELECTRONICS (100)		NEC소리스트 (100)
NEC TECHNOLOGY (100)		일전항공우주시스템 (100)
NEC SEMICONDUCTOR U.K (100)		스미토모쓰리엠 (25)

자료 : 〈表 3-14〉 동일.

〈表 3-17〉 日本電氣그룹 主要 系列企業의 所有構造

순위	일본전기가라스	동양통신기	日通工
1	일본전기 (42.1)	일본전기 (38.9)	일본전기 (34.0)
2	스미토모신타 (3.7)	스미토모신타 (5.4)	스미토모신타 (3.9)
3	뉴손 (3.7)	스미토모은행 (4.9)	스미토모생명 (2.9)
4	동양신타은행 (2.7)	스미토모해상 (2.4)	스미토모해상 (2.6)
5	스미토모은행 (2.0)	동양신타은행 (1.7)	일본채권신평 (2.4)

자료 : 〈表 3-9〉 동일.

트로닉스 4%로 구성되어있다.

일본전기의 자회사 및 관련회사는 모두 235개사로 구성되어있다. 일본전기의 특징은 전국 각지에 지방공장 혹은 분점형식으로 00일본 전기라는 100% 지분을 소유한 자회사를 가지고 있다. 생산부문을 주로 담당하는 지방공장 외에도 생산, 개발, 판매를 엮는 하나의 네트워크 체제를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기업도 다수가 존재한다. (<表 3-16>, <表 3-17> 참조) 대부분의 계열기업들은 비공개 회사로 母企業인 日本電氣의 지분이 100%이다. 그리고 몇몇 공개회사의 경우도 일본전기의 지분이 압도적이다. 마쓰시타그룹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모기업이 계열기업을 일방적으로 소유하고 있다.

第 4 章 日本型 企業所有構造의 效果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형 자본주의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은 멤버기업끼리의 相互所有와 계열기업에 대한 일방적 소유로 특징지을 수 있다. 특히 상호소유에 대해서는 서로 엇갈린 평가가 내려지고 있다. 贊成하는 쪽은 “戰後 개혁을 통하여 일본자본주의는 공적부문과 대기업부문으로 구성되었다. … 그중 대기업부문의 제도적 근간은 주식의 상호소유이다. 만약 순수 자본주의가 계속되었다면 戰後에 재벌과 같은 주주가 기업을 지배하게 되었을 것이다. 주주 혹은 자본을 소유한 자가 기업경영에 대한 이념, 지식 그리고 경영기술이 있었을리가 없다. 주식의 상호소유는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¹⁴⁾라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상호소유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상호소유가 일본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反對의견을 가진 사람도 있다. 相互所有로 말미암아 일본자본주의시스템 자체가 상당히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주식의 상호소유를 해소하고 대중자본주의로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株式의 상호소유에 의하여 테크노크라트가 경영자가 되었으나 늘 株主로부터 제약을 받지 않는다. 마치 북조선과 루마니아와 같은 독재자가 지배하는 기업도 많다. 기관투자가가 주주가 되었기 때문에 세습이 통용되는 경우도 있다. … 기업중에 민주주의가 시행되지 않고 있다. 社長이 생사여탈권이라는 全權을 쥐고 있다. 그러한 사장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선출되었는가, 좀처럼 명백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¹⁵⁾

14) “日本の經營の「死と再生」”, 『週刊東洋經濟』, 1993.5.1., P.9-10 인용.

15) “日本の經營の「死と再生」”, 『週刊東洋經濟』, 1993.5.1., P.10 인용.

아래에서는 이같이 두가지의 상반된 주장을 가져다 주는 이유를 바탕으로 株式相互所有의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살펴본다.

4-1. 日本型 所有構造의 肯定的인 效果¹⁶⁾

첫째, 相互所有된 일본기업의 경영자는 기업이 '오너(owner)'에 의하여 소유되었을 때와 유사한 형태의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는 광범위한 주주에 기반을 둔 대중자본주의에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專門經營人에 비하여 장기적인 시점에서 의사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상호소유하의 전문경영인이 가지는 의사결정의 視界(time horizon)는 대중자본주의보다 훨씬 장기적이다.

相互所有에서 協助關係가 깨지는 경우는 사업거래에서 기대한 원활한 협조관계가 유지되지 않는 경우이다. 이런 경우 서로가 주식을 매각해 버리거나 주주총회에서 현재의 경영진에 대하여 불리한 議決權을 행사하여 협조관계를 청산할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사례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대부분의 경우 상호소유관계에 있는 기업들은 서로 주식을 맞바꾼 형식 즉 주식을 '스와프(swap)'형식으로 의사결정권을 교환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것은 마치 人質을 서로가 교환한 것과 같은 형식을 띠게 된다. 따라서 경영진은 '오너'체제와 마찬가지로 거의 독자적으로 의사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장점을 누릴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法人資本主義하의 전문경영진은 '오너'와 거의 동등한 수준의 의사결정권을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한편 美國經營과 日本經營의 특성을 비교한 엑슨(Exxon)사의 八

16) 주식상호소유의 장점에 대해서는 伊藤邦雄·三隅陵司·市村豊彦, "株式持ち合いの累旋型", *Business Review*, Vol.37, No.3, 1991을 참조함.

城政基씨는 미국경영의 가장 큰 단점으로 투자의 단기성을 지적하고 있다. “많은 미국기업들이 장기적인 투자를 소원히 하고 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주주로부터의 압력을 마음에 두어 短期的인 利益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다. 장기적인 투자에 그다지 관심이 없다. 결과적으로 미국기업의 단기투자 성향이 미국기업 특히 제조업의 국제경쟁력 하락을 가져오고 있다.”¹⁷⁾ 美國에 비하여 日本이 장기적인 투자에서 비교우위를 누리고 있는 원천은 단연코 주식의 상호소유구조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상호소유의 주요 기능은 安定株主의 역할을 들 수 있다.¹⁸⁾ 안정주주의 중요한 기능은 기업내에 人的資源의 장기적인 육성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이다. 즉 상호소유된 기업들은 장기적인 계획에 의거하여 기업내에 인적자원을 축적할 수 있다.

일본기업에서 주식의 상호소유는 안정주주를 보장하고 이것은 기업으로 하여금 장기적인 관점에서 人的資源의 축적을 가능하게 한다. 특히 자본시장의 견제기능이 과도할 때 기업의 흡수합병이 일어날 빈도는 증대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현상은 경영진의 지위와 경영방침의 손상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인적자본의 축적과 기업간 관계에 중대한 손상을 미치게 된다. 이에 대하여 東京大의 三輪芳明 교수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펴고 있다.

“日本企業의 특징인 인적자본의 축적을 중시하는 경영은 현대기업 경영의 본질적인 내용에 비추어볼 때 합리적인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그러한 경향은 더욱더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요한 것이 人的資源의 축적이라면 인적자본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사람이 강한 입장에 서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이점이 많은 일본 대기업

17) 八城政基, 『日本の經營 アメリカの經營』, 日本經濟新聞社, 1992, P.189 인용.

18) 三輪芳明, “株式持ち合いは有益”, 日本經濟新聞, 1991.8.19 참조.

의 특징이다. 즉 종업원 집단이 강한 입장에 서고 경영진은 그 가운데 대표로서 선출되어 종업원의 의향을 받아 의사결정을 행사하는 사실과 일치한다.”

셋째, 事業關係에 있는 기업사이에 형성되는 주식의 상호소유관계는 인질교환과 유사한 효과를 낳는다. 따라서 거래당사자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잠재적인 적대행위의 가능성을 줄이고 협조적인 행동의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예를 들면, 거래관계에 있는 기업들이 주식교환을 행하는 경우 中間組織理論에서 말하는 「去來에 필요한 독특한 資産」을 서로 교환하는 것이 된다. 이같은 현상은 일본의 기업 사이에서 흔히 관찰할 수 있는 일의 하나이다.¹⁹⁾ 요컨대 주식상호소유는 거래당사자들의 협조적인 행동을 촉진할 수 있는 하나의 항구적인 메카니즘에 해당한다.

더욱이 주식의 상호소유는 궁극적으로 기회주의적인 행동의 발생으로 인한 機會費用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온다. 그러나 주식의 상호소유로 인한 비용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주식의 상호소유분 만큼 기업은 자기자본의 유동성이 줄어들게 된다. 유동성 감소로 인한 이자소득의 감소와 같은 효과는 지금까지 거의 무시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들어 자본의 효율성을 우려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 1993년도 2월 日本經濟新聞社가 행한 22개 거대기업에 대한 조사결과는 기업과 은행 그리고 생명보험회사 사이에 형성되어있는 주식의 相互所有關係가 다소 변화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²⁰⁾ 주가가격의 하락과 영업환경의 악화로 인하여 주식을 보유하는 위험도를 중시한 기업과 금융기관은 안정주주의 입장을 수정하여 保有株의 일부를 매

19) 孔柄溟, “母企業과 協力企業의 組織的 協力關係-韓·日 自動車企業의 比較分析을 中心으로-”, 韓國經濟研究院, 1993.4 未發表論文 참조.

20) 日本經濟新聞社, “搖安らく定株主”, 1993년 2월 13일자 참조.

각하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어, 농기계를 주로 생산하는 구보다社의 경우 資産效率을 높이기 위하여 상호소유주를 팔아서 신규분야인 컴퓨터분야의 사업 재구축에 사용할 예정이다.²¹⁾ 왜냐하면 상호소유로 인하여 배당 회전율이 낮아진 점과 차입금의 금리를 고려하면 자산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상호소유주 중의 일부를 팔아치우는 편이 낫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넷째, 相互所有는 서로간에 원활한 情報交換을 촉진하여 정보측면에서 시너지효과를 낳는다. 이것은 상호소유관계에 있는 기업의 경영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예를 들면,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의 경우 거래 한건 한건마다 완결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서로가 단기간에 利潤을 극대화하려는 동기가 존재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스스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상대방 기업에게 제공할 가능성은 줄어들게 된다. 이것은 시장거래에서 거래 당사자가 공유할 수 있는 정보의 크기는 현저히 줄어들게 됨을 의미한다.

그러나 주식의 상호소유관계에 있는 기업들은 장기간에 걸쳐 공동이윤극대화를 도모함으로써 서로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共有할 필요를 강하게 느끼게 된다. 교환하는 정보의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상호소유관계에 있는 기업들은 양질의 고급 정보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것은 곧바로 사업에 대한 위험도를 줄이게 된다. 이같은 현상의 대표적인 경우는 綜合商事와 메인뱅크(main bank)에서 관찰할 수 있다.

다섯째, 相互所有는 失權株 발생의 가능성을 낮춤으로써 자금조달에 따른 위험을 통제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흔히 주식의 상호소유에 대한 가장 비판적인 주장은 상호주 소유가 단순히 참가 기업들에

21) 日本經濟新聞, “株の持ち合い解消へ”, 1993년 2월 18일자 참조.

계 가공의 주식을 교환하는 것에 그친다는 점이다. 즉 상호소유가 주식자본의 공동화 현상을 초래하거나 자기 능력밖의 사업확장에 강력한 動因을 제공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주식발생이 외부투자자로부터 자본조달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에도 정면으로 위배된다.

이같은 批判이 타당하려면 두 회사간에 株式引受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타당한 면도 있다. 다시 말하면 동일한 금액을 동시에 주고 받을 때는 주식자본의 공동화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비판받아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 경우는 서로 다른 資金調達 계획에 입각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같은 비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상호소유관계에 있는 여러 회사중 한 회사가 새로운 자금을 주식발행으로 조달하고자 하는 경우 각 회사는 우선적으로 주식인수에 응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결과적으로 상호소유관계에 있는 기업들은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증가하게 된다.

여섯째, 상호소유는 財務危險度를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다. 상호소유가 종결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상호소유액 만큼 自己資本이 증가하게 된다. 설령 실체면에 있어서 상호소유의 전과 후에 아무런 변화가 없을지라도 불입자본비율(자기자본비율)이 증가하게 된다. 自己資本比率은 흔히 재무위험도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일본의 경우 주식상호소유는 평균적으로 불입자본금을 약 20% 인상시키는 효과가 있다. 뿐만 아니라 상호소유가 가져오는 사업리스크의 감소로 인하여 전체적으로 자금의 가용 가능성은 증대하기 마련이다.

4-2. 日本型 所有構造의 否定的인 效果²²⁾

첫째, 주식의 상호소유에 기반을 둔 經營者의 責任基準은 자기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상대방 기업에 대해서 뿐이다. 여기서 책임을 지지않는 경영이 행하여 질 수 있는 가능성이 증가하게 된다. 즉 상호소유 관계에 있는 경영자들은 상호소유관계에 있는 경영진을 주로 의식하기 때문에 사회적 관점에서 경영자의 사회적 책임론같은 주장은 공허한 이야기가 될 수 있다.

그것의 가장 전형적인 사례가 公害問題이다. 2차대전 전의 경영자는 현재의 기업경영진에 비하여 훨씬 公害문제에 관심을 가졌을 것이다. 왜냐하면 公害의 영향은 子孫의 이해관계에 직접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쟁전 재벌가를 대신하여 경영권을 행사하였던 '番頭(토박이 경영인)' 역시 資本主의 이익과 公害 문제가 일치하기 때문에 상당한 관심을 가졌을 것이다. 그러나 전문경영진들은 지금 상황에서 면책을 받는다면, 장기적인 기업의 이미지 등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구태여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 이런면에서 본다면 일본의 경영진이 장기적인 기업의 장래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일반적인 믿음은 지나치게 과장되어 있는 점이 있다.

이같은 短點은 일본만이 특별한 것은 아니다. 전문경영인체제를 선택하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경험하는 일이다. 미국의 경우도 이같은 단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80년대부터 社外重役制度를 채택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公害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사외중역제도의 본격적인 도입을 가능케 하는 주요 요인이었다.

둘째, 주식의 상호소유에 의한 事業去來의 지속은 이른바 公正去來를 저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즉 상호소유관계에 있는 기업끼리의 사업거래에서 거래가격과 조건 면에서 불공정행위가

22) 奥村宏(1991) 참조.

발생할 수 있다. 즉 法人에 의한 法人의 가격조작이 발생할 가능성이 증대하게 된다.

셋째, 株式의 流動性이 현저히 줄어들게 된다. 결과적으로 주식소유단계에서 개인투자자를 배척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이같은 현상은 실질적으로 주식소유의 기회균등이라는 원칙에 위배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넷째, 법인에 의한 株價操作을 가능하게 하여 일본 주식시장의 투기화를 가능하게 한 주요 원인중의 하나이다. 일본의 주식발행제도는 1968년 日本樂器를 효시로 하여 시가발행, 공모방식으로 전환하게 된다. 상호소유중 형식에서 A사는 B사 주식을 高價로 매입하고, 상대적으로 B사는 A사 주식을 高價로 매입하여 서로의 주가를 상승시켜 주게 된다. 결과적으로 시가발행증자에 의하여 증시의 가격메카니즘을 살리려는 의도에서 출발한 市價發行制度는 법인에 의한 가격조작메카니즘으로 둔갑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일본의 주식시장은 법인이 주도하고 법인에 의한 그리고 법인을 위한 주가가 형성되게 되었다.

다섯째, 법인의 주식의 상호소유는 일본주식시장의 投機化를 촉진하게 된다. 법인의 증권매입은 이윤증권이 아니기 때문에 經營支配를 목적으로 하는 증권이다. 따라서 회전율은 저하되고 개인투자자의 판단기준은 시장의 건전한 판단기준에서 이탈하기 시작하였다. 개인은 자신의 엄밀한 판단기준없이 법인의 동향에 따라서 매입을 결정하는 이른바 뇌동매매가 증가하게 된다. 즉 법인의 매매 시점과 정보가 투자자에게 주요한 선행지표가 되기 시작하였다. 여기서 증권회사는 회전율 수수료를 올리려는 의도가 개입되게 되고 결과적으로 個人投資家は 投機化할 가능성이 증대한다. 1972년을 기준으로 하면 뉴욕증시의 주식매매회전율은 24.5%, 동경증권거래소의 회전율은 79%라는 극단적인 차이가 이를 잘 반영해 주고 있다.

第5章 結論

日本型 企業所有은 ‘法人에 의한 法人所有’라는 독특한 형식의 구조를 기반으로 하는 자본주의의 한가지 類型이다. 최근들어 이같은 체제가 韓國 企業集團이 나아가야할 바람직한 소유구조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일본형 소유구조는 그것의 역사적 전개과정이나 여러가지 특성 면에서 있어서 일본에 독특한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 章에서는 지금까지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日本型 企業所有構造의 특성을 정리하고, 일본형 소유구조가 오늘의 한국경제에 주는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5-1. 日本型 所有構造의 特性

일본형 소유구조는 몇가지의 뚜렷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 일본경제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巨大企業은 企業集團과 獨立系 企業그룹으로 구성된다. 기업집단은 3대 구재벌계와 3대 은행계 社長會를 구성하는 멤버기업으로 이루어져 있다. 편의상 독립계 기업그룹은 東洋經濟新報社가 매년 발표하는 40대 거대기업을 말한다. 40개 독립계 기업그룹 중에서 22개 기업은 기업집단의 멤버기업 중 거대기업으로 독립적 성격이 강한 기업으로 이루어져 있다. 나머지 18개 기업은 기업집단과 공식적으로 資本 및 人的資源 면에서 관련을 맺고 있지 않다. 여기에는 마쓰시타전기, 아지노모노, 日本石油, 소니, 新日本製鐵, 혼다技研工業 등이 포함된다.

둘째, 기업집단의 소유구조는 멤버기업들 사이에 상호소유로 이루어져 있다. 다시 말하면 법인이 법인을 소유하는 형식의 소유구조를

맺고있다. 그러나 멤버기업들 중에서 특정 기업이 지나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는 멤버기업들간의 관계가 평등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정한 협조 및 긴장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舊財閥系와 銀行系 기업집단내 멤버기업의 株式相互保有率(평균)은 각각 27.46%와 15.82%로 전체 평균은 21.64%이다. 그러나 단일 멤버기업의 平均持分率은 구재벌계와 은행계가 각각 1.57%와 1.27%로 전체 평균은 1.42%에 불과하다. 이러한 사실은 멤버기업들이 상호소유관계를 가지되 특정 멤버기업이 지나치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는 멤버기업간 다각적 소유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기업집단 사이의 소유관계는 그다지 배타적이지 않다. 이는 특정 기업집단의 멤버기업에 대하여 다른 기업집단의 멤버기업들이 상당한 지분을 참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기업집단 사이에 일정한 相互所有關係를 유지함으로써 安定株主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다른 기업집단내 금융기관의 역할이 활발하다.

예를 들면, 6대 기업집단의 동일 기업집단내 멤버기업간 相互所有率은 35.1%(상위 50위 지분을 기준)이다. 이에 반하여 다른 기업집단내 멤버기업들의 상호소유율은 26.41%이고 이 중에서 금융기관의 상호소유율은 23.83%이다.

넷째, 기업집단의 소유구조에서 金融機關(생명보험회사, 도시은행, 신탁은행, 그리고 해상화재보험 등)은 事業法人(종합상사, 주요 제조업)에 비하여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는 法人資本主義에서 금융기관과 사업법인이 상호소유를 유지하되 金融機關은 事業法人에 비하여 지배적인 위치를 확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미쓰이 그룹의 경우만 하더라도 미쓰이생명, 사쿠라은행, 미쓰이신탁은행, 미쓰이해상화재보험 등이 주식소유 면에서 상위

1위부터 4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외에 미쓰이물산, 미쓰이부동산, 도시바, 도요타자동차, 도레이, 미쓰이조선의 순서이다. 이같은 현상은 대부분 기업집단에서 관찰할 수 있다.

다섯째, 기업집단의 소유구조에 있어서 가장 지배적인 위치를 확보하고 있는 기업은 相互會社 형태를 가진 生命保險會社이다. 즉 생명보험회사는 멤버기업 중에서 핵심기업인 金融機關과 事業法人을 일방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그러나 생명보험회사는 主人이 존재하지 않는 相互會社로 일종의 機關投資家로 볼 수 있다.

여섯째, 순수 獨立系 기업그룹에서 母企業에 해당하는 거대기업의 소유 면에서 금융기관이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생명보험회사의 비중이 높은 편이며 여러 금융기관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그러나 계열기업들이 모기업에 대하여 상호소유의 비중이 높은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예를 들어, 마쓰시타 그룹의 모기업인 마쓰시타전기산업의 상위 10대 주주는 4위인 계열기업 마쓰시타興産을 제외하고 모두 금융기관이다. 이들 금융기관 중 스미토모그룹 4개사, 상와그룹 1개사, 미쓰비시그룹 2개사, 나머지는 독립계 금융기관이다.

일곱째, 기업집단의 멤버기업들이나 독립계 기업그룹을 이루는 거대기업들은 각각이 하나의 그룹을 형성하면서 수많은 系列企業(자회사 및 관련기업)들을 일방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예를 들면, 순수한 獨立系 企業그룹에 속하는 마쓰시타 그룹과 기업집단 멤버기업으로 독립계 기업그룹에 속하는 日本電氣 그룹을 살펴보면 그룹의 중심을 차지하는 모기업이 계열기업을 일방적으로 지배하는 계열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즉 마쓰시타 그룹과 일본전기 그룹의 母企業인 마쓰시타전기산업과 日本電氣가 각각 301개와 235개 계열기업을 지배하고 있다.

위의 결과를 종합하면 日本型 企業所有構造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相互會社인 주요 生命保險會社가 주요 금융기관과 사업법인을 일방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그리고 특정 기업집단내 금융기관과 사업법인이 상호소유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호소유관계는 다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은행과 사업법인에 의하여 보장되고 있다. 사업법인은 수많은 계열기업들에 대하여 일방적인 지배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요컨대 巨大企業끼리의 상호소유와 계열기업에 대한 일방적 소유가 병존하고 있는 것이 日本型 法人資本主義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5-2. 日本型 所有構造의 敎訓

일본은 1868년 明治維新을 기점으로 정부와 기업의 긴밀한 협조관계에 바탕을 두고 근대화를 추진하여 왔다. 이면에는 서구 선진국을 따라잡아 국가를 외세로부터 지키려는 ‘富國強兵’의 철학이 짙게 깔려있다. 이같은 사상은 지금까지도 일본경제를 관류하는 기본 철학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富國強兵’의 주체는 기업이다. 때문에 일본정부는 기업시스템도 서구 선진국과 달리 추격하는 국가의 입장에 적합한 효율적인 시스템을 추구해 왔다. 이중의 하나가 ‘法人에 의한 法人所有’라는 독특한 형식의 法人資本主義이다. 일본정부가 장기적인 계획 아래에서 의도적으로 법인자본주의라는 기업시스템을 만들어온 증거는 없다. 다만 일본정부는 경제환경의 변화에 긴밀하게 적응해 가는 과정에서 법인자본주의를 암묵적으로 조장해 왔다.

패전후 일본에 진주한 점령군사령부의 경제정책은 일본경제의 민주화 추진이었다. 이를 위하여 전쟁 전과 같은 재벌이 다시 부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본에서 처음으로 제정된 1947년의 獨占禁止法은 事業會社가 다른 회사에 출자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²⁵⁾

그러나 이같은 점령군사령부의 이상은 그다지 오래가지 못한다. 2년 후인 1949년 독점금지법 제 1차 개정작업에서 事業會社의 주식소유는 原則的 禁止에서 制限的 禁止로 대폭 완화된다.

事業會社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이 완화되는 주된 이유는 당시의 경제상황과 깊은 연관이 있다. 전쟁 후 특별손실의 부담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의 경영을 정상화시키기 위하여 막대한 규모의 증자가 필요하였다. 게다가 지주회사정리위원회 등에 근거한 주식물량의 증대로 말미암아 주식시장에서 엄청난 규모의 주식이 공급된다. 법인의 주식소유를 대폭적으로 완화하는 방법외는 증권시장의 혼란을 극복할 수 있는 靛족한 방법이 없었다. 이같은 현실적인 필요에 의하여 시작된 株式所有의 法人化는 이후에 계속적으로 진행된 독점금지법 개정작업에서 완화되어 왔다.

그러나 1977년 독점금지법 개정에서는 그동안의 완화방향을 다시 규제하는 쪽으로 정책이 선회하게 된다. 즉 대규모 사업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出資總額限度가 純資產額 내지 自己資本金의 100%를 초과하지 못한다는 조항이 들어가게 된다.

出資總額制限이 새롭게 들어가게 된 이유는 대규모 사업회사의 지배력 강화가 문제점을 노출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1949년 독점금지법 개정작업 이래로 대규모 사업회사는 많은 사업분야에 걸쳐서 광범위하게 株式을 취득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배력을 강화하여 왔다. 즉 주식의 상호소유나 계열화를 통하여 기업집단의 지배력을 강화해 온 것을 말한다.

이같은 회사는 持株會社의 성격을 지님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저해

25) 公正去來委員會, 『獨占禁止法 20年史』, 1965, P.53-54와 笹井昭夫·松村晴路, 『經濟法講義』, 法律文化社, 1987, P.80-95 참조.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독점금지법 제 9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지주회사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제 10조의 회사 주식의 보유제한 규정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독점금지법이 지주회사를 금지하고 있는 취지, 즉 사업지배력의 과도한 집중을 방지하는 관점으로부터 1977년 개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결과적으로 1949년부터 1977년까지 약 30여년 동안 일본정부는 기업간 상호소유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간 상호소유를 촉진시켜왔다. 물론 規制緩和 작업에는 經團聯을 중심으로 하는 재계의 요구가 강하게 반영되었다. 이로서 일본사회는 공급자를 중시하는 기업 중심사회로 변모하여 가는데 정부와 기업이 혼연일체가 되어 행동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日本の 法人型 企業所有가 다시 국제적인 관심사로 떠오르는 것은 1989년부터이다. 미국은 무역적자의 해소를 위한 美日構造調整協議에서 일본의 법인자본주의를 주요 의제로 제기한다. 1991년 6월 28일 “미일구조조정협약의 최종보고”에서 미국측은 일본에 대해서 6가지 의제를 요구한다. 미국 정부가 제시한 주요한 의제중의 하나가 日本의 系列關係(주식상호소유, 금융계열, 기업그룹)의 개선이다. 즉 일본의 계열관계로 말미암아 폐쇄적인 거래관행이 생기게 되고, 이것이 무역적자의 구조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는 미국측의 지적이다.

이를 둘러싸고 미국과 일본 학자사이에 이른바 ‘系列論爭’이 벌어지게 된다. 일본측의 주장은 일본형 법인소유구조가 여러가지 유형의 자본주의시스템의 하나로 오히려 미국측이 일본체제의 장점을 적절히 도입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日本政府는 법인소유구조의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한 기업에 대한 監視 및 監督機能의 강화를 고려하고 있다. 이것은 이미 1993년 10월 商法 개정의 주주소송권 보호나 사외감사역제도의 도입 등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그러나 법인자본주의의 근본적인 개혁을 요

구하는 미국측 주장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을 방침이다. 요컨대 일본 정부 및 기업은 기업간 상호소유의 긍정적인 효과를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법인소유 구조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계속 유지할 전망이다.

5-3. 韓國型 企業所有構造

최근들어 대기업 소유집중의 완화와 소유 및 경영의 분리라는 주장과 더불어 대기업의 소유구조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전개되어 왔다. 정부는 법인의 주식소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나가고자 계획하고 있다.

新經濟 5개년 계획에 의하면 계획기간 동안 出資總額限度를 순자산의 현행 40%에서 25%까지 축소 조정할 예정이다. 이같은 주장은 30대 기업집단이 다른 회사에 대하여 출자하고 있는 평균 출자총액이 純資産額의 28%(93년 4월말 기준)에 불과하여, 40%라는 상한제도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경제력집중의 완화정책이 효과가 없다는 것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해할수 없는 이같은 이유를 제외하고 정부는 개정작업이 필요한 것에 대한 별다른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스스로 株式所有의 법인화 현상을 방지하여 영미식 자본주의에 가까운 대중자본체제를 선택하고자 한다. 이같은 움직임이 과연 올바른 방향인지에 대해서는 좀더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할 것이다.

出資總額限度 制度는 법인소유구조의 뿌리에 해당하는 제도이다. 여기서 보다 근본적인 질문은 한국의 기업을 영미형 소유구조로 끌어갈 것인가, 아니면 일본형 소유구조에 가깝게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행 제도만 하더라도 일본에 비하여 법인의 주식소유를 대폭 제한하는 제도를 이미 운용하

고 있다.

일본은 주식소유의 법인화에 대하여 우리보다 훨씬 관대한 자세를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일구조조정협약에서 미국측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법인자본주의의 개편에는 미동도 하지 않는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같은 일본의 움직임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우리나라는 앞으로도 상당기간 동안 서구 선진국과 일본의 앞선 경제를 추격해 나가야 하는 단계에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한다면, 기업의 效率性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업시스템을 만들어가야 한다. 게다가 목전에 둔 완전한 시장개방과 자본자유화를 고려하면 국내 기업의 적절한 경영권 보호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기업의 주식소유에 기반을 둔 적절한 법인소유구조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더하여 한국형 기업시스템은 '오너'지분의 감소분을 보충하는 수단으로 從業員持株制의 적극적인 활용과 1차 메이커로 이루지는 協力會에 의한 일정분의 주식소유를 하나의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法人所有, 오너소유, 종업원지주제, 그리고 협력회 소유 등이 일정한 긴장과 균형관계를 갖는 소유구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같은 기업의 주식소유는 영미식도 아니고 그렇다고 일본식도 아니면서 양 체제의 장점을 살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

參 考 文 獻

- 孔柄誤, 『母企業과 協力企業의 組織的 協調關係 - 韓・日 自動車企業의 比較分析을 中心으로-』, 韓國經濟研究院, 1993.4
- 經濟企劃庁, 『平成4年版 經濟白書』, 1992
- 鈴木邦夫, “財閥から企業集團・企業系列へ-1940年代後半 企業間結合 解體・再編過程-”, 『土地制度史學』, 1986
- 東洋經濟新報社, 『日本の株式會社』, 1986
- , 『實踐ゼミナル證券・金融・ファイナス』, 1987
- , 『日本の6大企業集團-その組織と行動』, 1992
- , 『企業系列總覽 '93』, 1992
- , 『會社 四季報-1993年 新春-』, 1993
- 大園友和, 『企業系列と業界地圖』, 日本實業出版社, 1992
- 大藏省財政史室編, 『昭和財政史-終戰 講和-』, 第2卷(獨占禁止, 1982 年刊), 第14卷(保險・證券, 1979年刊)
- 日本經濟新聞, “株式持ち合いは有益”, 1991年 10월 22일자
- 奥村宏, 『法人資本主義の構造』, 現代教養新書, 1991
- , 『法人資本主義-「會社本位」の體系』, 朝日文庫, 1991
- , 『解體する「系列」法人資本主義』, 社會思想社 1992
- , “日本的經營の「死と再生」”, 『週刊東洋經濟』, 1993.5.1
- 安岡重明, 『三井財閥』, 日本經濟新聞社, 1982
- 伊藤邦雄・三隅陵司・市村豊彦, “株式持ち合いの 累施型”, *Business Review*, Vol.37, No.3, 1991
- 日本經濟新聞, “搖安らく定株主”, 1993年 2월 13일자
- 日本經濟新聞, “株の持ち合あい解消へ”, 1993年 2월 18일자
- 全國證券去來協議會, 『株式分布狀況調査』, 각년도

株主會社整理委員會,『日本財閥とその解體』,1951

通産産業省 産業政策研究會,『日米の企業行動比較』,1990

八城政基,『日本の經營 アメリカの經營』,日本經濟新聞社,1992